

新規任用者訓練教材

1979

一般行政實務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新規任用者訓練教材

1979

一 般 行 政 實 務

I. 政府組織現況	5
1. 行政組織의 特徵	7
2. 우리나라 行政組織 및 公務員에 關한 基本法令	13
3. 政府의 機構現況	21
4. 經濟企劃院 機構 및 業務現況	25
II. 人事關係 法令解說	35
1. 人事行政의 意義	37
2. 人事行政의 範圍	37
3. 人事法令	38
4. 國家公務員法의 概要	41
5. 公務員의 權利, 義務, 責任	46
III. 文書管理	57
1. 公文書作成要領	59
2. 文書受發節次	62
3. 報告統制	64
4. 公文書의 書式	67
5. 文書의 保存, 保管	68
6. 차-트의 作성과 報告(부리핑)要領	70

IV. 庶政刷新	73
1. 庶政刷新의 歷史的背景	75
2. 庶政刷新의 意義	77
3. 庶政刷新의 必要性.....	79
4. 公務員社会에서의 庶政刷新의 対象.....	82
5. 社会不条理 除去	85
6. 庶政刷新 推進의 精神姿勢	86
7. 庶政刷新의 推進責任	88
8. 結 論	89
V. 牧民心書의 精神	91
1. 李朝의 実学思想과 清白吏精神	93
2. 茶山의 牧民觀	97
VI. 統計와 그 重要性	111
1. 統計의 概念	113
2. 統計調査와 그 目的	114
3. 統計調査의 分類	115
4. 統計法에 의한 統計의 分類	120
5. 統計法 解説	121
6. 統計와 行政	128

附錄Ⅰ．各 統計調查 概要 (調查統計局 所管).....	131
附錄Ⅱ．指定統計一覽表	137
附錄Ⅲ．統計法	139
附錄Ⅳ．統計法 施行令	145
附錄Ⅴ．統計法 施行規則	153

I . 政府組織現況

1. 行政組織의 特徵	7
2. 우리나라 行政組織 및 公務員에 關한 基本法令	13
3. 政府의 機構現況	21
4. 經濟企劃院 機構 및 業務現況	25
가. 經濟企劃院 機構表	25
나. 調查統計局 機構表	26
다. 調查統計局 機構表 (영문)	27
라. 經濟企劃院 業務現況	29
(1) 本 庁	29
(2) 調查統計局	31

1. 行政組織의 特徵

가. 現代行政의 特徵

現代行政이란 3 權分立을 前提로 하되, 行政이 우월한 地位에 있는 것을 뜻하며 奉仕國家, 福祉國家로서의 職能的 機能을 維持하여 從來의 단순한 現狀維持, 秩序維持 등의 安定爲主의 行政에서 積極的이고 指導的인 發展行政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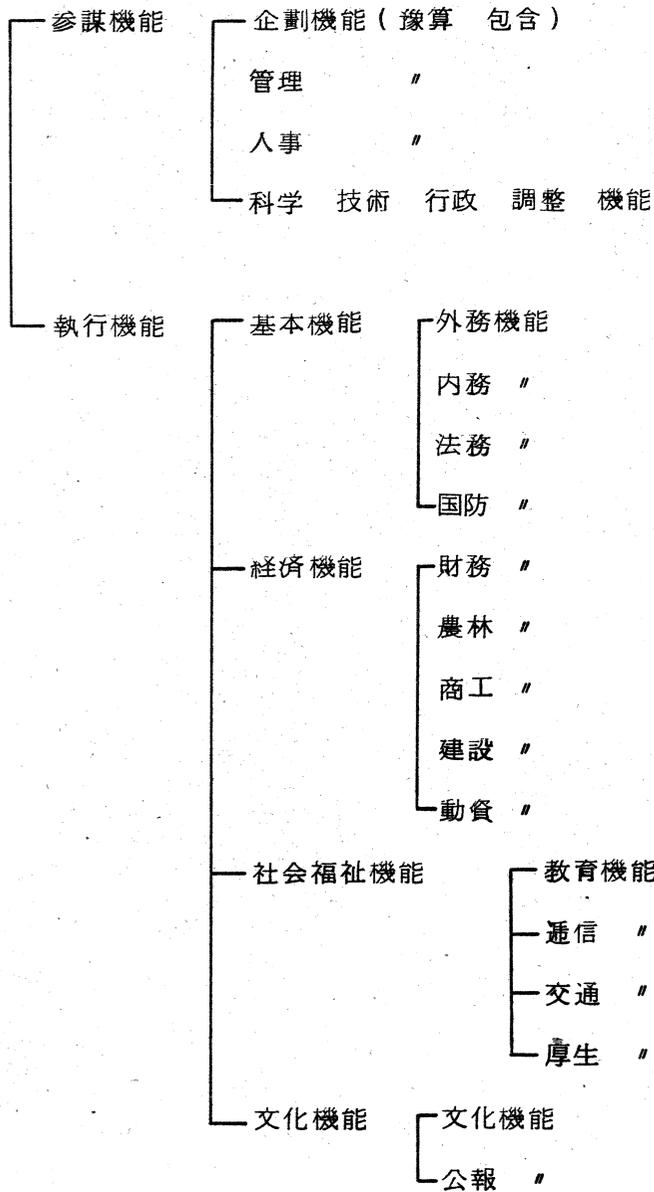
따라서 行政의 量은 急激히 늘어 人員 및 豫算이 팽창하고 있고, 行政權도 量的으로 크게 擴大되어 이에 대한 統制와 責任있는 行政權의 行使가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現代行政의 보다 積極的인 發展을 위하여는 高度의 專門性, 技術性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現代國家는 巨大政府를 갖게 됨으로써 政府는 國民의 保護者(Protector), 調整者(Controller), 仲裁者(Arbitrator) 이면서 同時에 國民에 대한 物心兩面의 支援者이며 案內者로서의 機能을 遂行하여야 한다.

〈現代國家의 行政機能〉

M. E. Dirmock

區 分		秩 序 機 能		奉 仕 機 能	
		保 安 機 能	規 制 機 能	援 護 機 能	直接Service機能
內 容	對 內	犯罪, 風俗, 保健, 交通, 消防, 營業, 騒音, 天災地變 對策等	企業獨占, 株式証券, 通貨, 度量衡, 勞動組合等의 統制, 勤勞, 安全確保, 商去來 統制, 醫藥品, 食品統制等	救護, 援護, 年金, 保險, 事業補助等	教育事業, 通信, 鐵道, 住宅, 電氣, 病院, 博物館, 公園, 圖書館, 運動場, 公益事業等
	對 外	外交, 國防, 僑胞, 保護, 外國人 및 外國人 財產 統制, 戰時의 動員等	移民規制, 歸化, 出入國, 外換, 貿易, 關稅規制 등	僑胞 援護, 友邦 援助, 國際機構와의 協力等	僑胞를 위한 事業 (教育, 圖書館等), 國際 郵便, 電信事業 後進國 開發事業等
	性 格	固有的 機能 古典的 " " 消極的 " " 權力的 " "	(左側으로 갈수록) (右側으로 갈수록) →		派生的 機能 現代的 " " 積極的 " " 非權力的 " "

現在 우리나라의 政府가 遂行하고 있는 機能을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大別할 수 있다. (67 行政改革調査委員會 区分)



나.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特性

- (1)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現代國家는 福利國家의 行政으로 複雜多岐한 反面, 統一的인 行政目的의 實現이 要求되므로 그 一般的 特色으로 民主性和 能率性, 專門性의 合理的 調和에 있는바 우리나라 行政組織도 크게 다를바 없다.

民主主義를 基調로 하는 우리 憲法과 政府組織法은 民主化를 그 基本原理로 하고 專門性, 能率性과의 調和를 試圖하고 있다.

(2) 行政組織의 民主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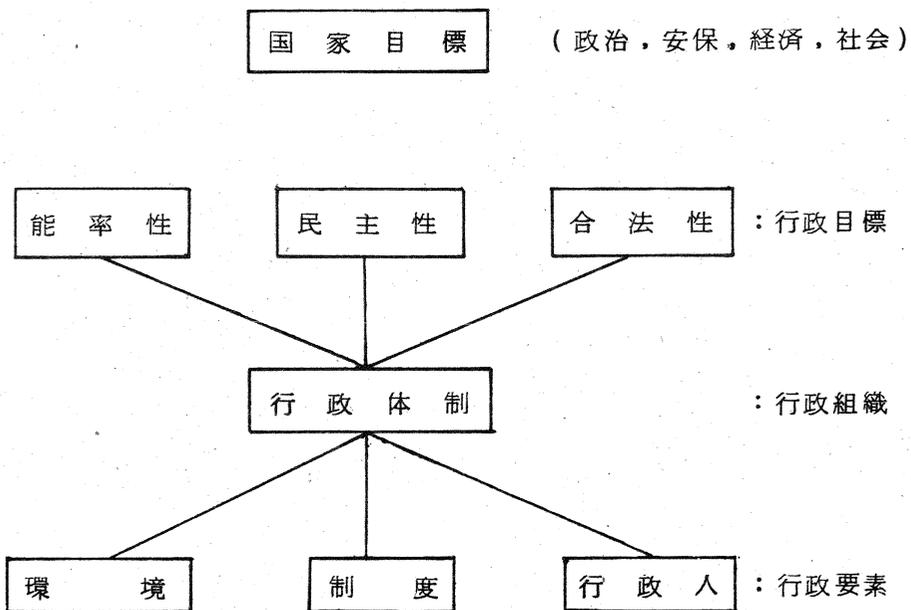
- 行政機關 法定主義, 合議制 機關을 통한 民主的 統制,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의 自主的 機關構成, 職業公務員 制度 -

(3) 責任行政의 原則

政黨責任主義

(4) 行政組織의 能率性

(5) 行政의 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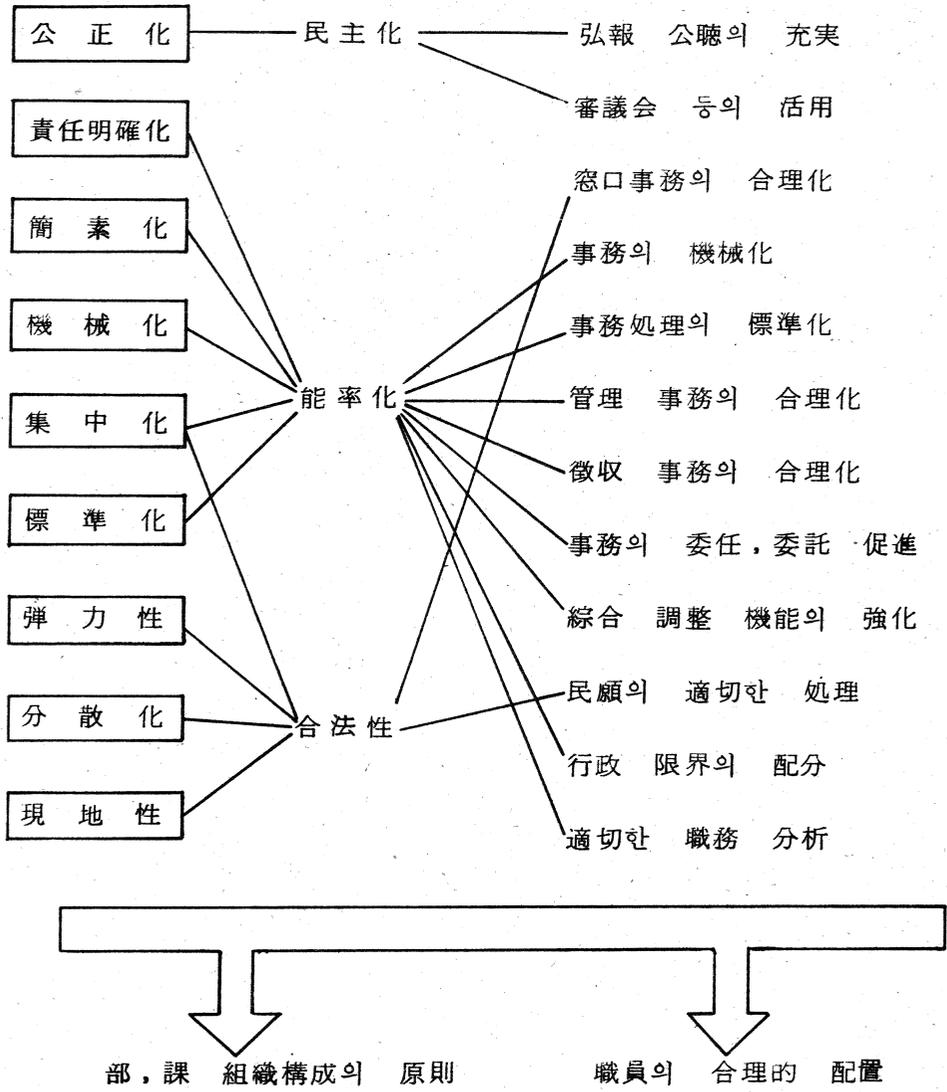


- 1. 官僚性 排除
- 2. 对民行政行態
刷新
- 3. 社会価値觀
浄化

- 1. 現地性
- 2. 能率性
- 3. 經濟性

- 1. 專門性
- 2. 技術性
- 3. 紀綱

다. 行政組織 構成의 原則



라. 行政組織에 影響을 미치는 動的要素

- (1) 國家目標의 變更
- (2) 政治 狀態
- (3) 經濟 狀態
- (4) 社會의 意識構造
- (5) 人的 資源
- (6) 業務量
- (7) 業務 處理 節次
- (8) 業務 處理 方法
- (9) 工學的 變更
- (10) 施 設
- (11) 裝 備
- (12) 管理者 交替
- (13) 地理的 問題

2. 우리나라 行政組織 및 公務員에 관한 基本法令

가. 行政組織의 設置根拠

(1) 憲法機關

(가) 統一主体國民會議

(나)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會議, 國家安全保障會議, 監查院

(다) 國 會

(라) 法 院

(마) 憲法 委員會

(바) 選舉管理委員會

(2) 法律機關

(가) 經濟科學審議會 議法 : 經濟科學審議會 議

(나) 政府組織法 : 2 院 , 14 部 , 4 處 , 14 庁 , 4 外局

(다) 中央情報部法 : 中央情報部

(라) 地方自治法 : 地方自治團體

(3) 大統領令機關

(가)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 및 附屬機關

(나) 特別地方行政機關과 所屬機關

나. 우리나라의 行政組織形態

(1) 行政官庁

行政事務에 관하여 國家의 意思를 決定하고 이를 國民에
對하여 表示, 執行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國家機關

(가) 行政官庁은 國家機關이다.

(나) 行政官庁은 國家의 行政事務에 관하여 國家의 意思를 決
定하는 機關이다.

(다) 行政官庁은 國家의 意思를 決定할 뿐만 아니라 그 意思
決定을 外部 行政客體에 對하여 表示, 執行할 수 있는 權
限이 있어야 한다. - 意思機關(懲戒委員會)과 區別 -

- 大統領, 國務總理, 院, 部, 處의 長, 外局의 長 -

(政府組織法 第2條)

(2) 補助機關

行政官廳을 補助하는 機關 스스로 意思를 決定하여 外部에 表示할 權限은 없고 意思決定의 準備 또는 決定된 意思의 執行을 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官廳의 委任에 의하여 또는 法律上의 規定에 의하여 官廳에 갈음하여 그 權限을 알아보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賦與된 代理權의 範圍 안에서 補助機關도 官廳인 地位에 서게 된다. 行政官廳인 各部長官에 對하여 次官, 次長, 室長, 局長 또는 課長이 補助機關이다.

(政府組織法 第2條 第2項)

行政學上으로는 系線組織 (Line) 에 해당된다.

(3) 補佐機關

行政官廳 및 補助機關의 意思決定에 專門的 經驗이나 專門的 知識을 가지고 補佐하는 機關이다. 幕僚組織 (Staff) 또는 參謀組織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長官과 次官 下에 次官補를, 機關長, 次官, 次長, 局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調查研究를 通하여 直接 補佐하는 担当官을 말한다. 補佐機關은 行政官廳과 같이 決定權이 없으며 補助機關과 같은 執行權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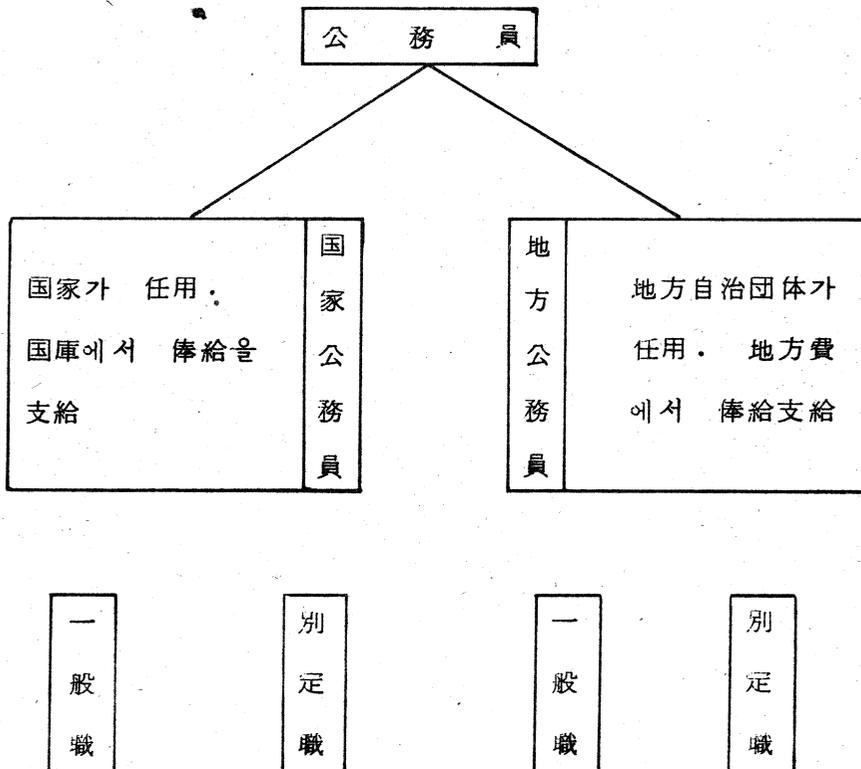
(政府組織法 第2條 第4項)

(4) 其他機關

- 所屬機關
- 特別地方行政機關

- 諮問機關
- 地方自治團體
- 現業行政機關
- 中央行政機關과 一線行政機關
- 企劃機關과 執行機關
- 公安行政機關

다. 行政組織 構成員인 公務員의 種類



(1) 一般職과 別定職

〈 別定職 公務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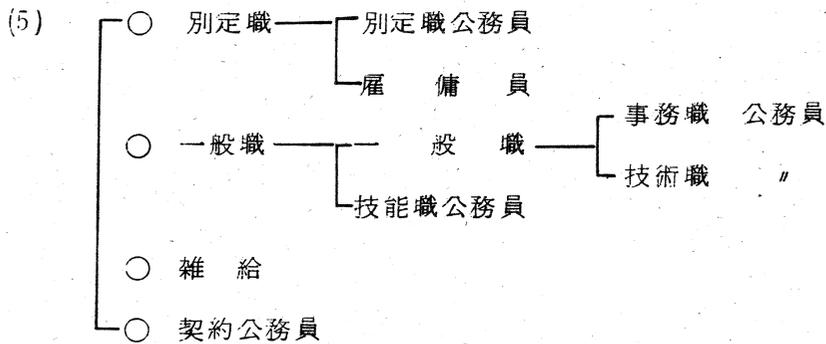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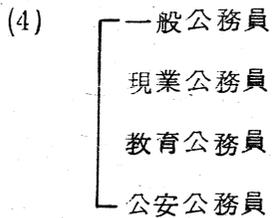
- ①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国会의 同意를 要하는 公務員.
- ② 統一主体国民會議의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 監査院의 院長, 監査委員,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 国会의 事務總長, 次長 및 專門委員, 法院行政處의 處長 및 次長,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
- ③ 國務總理, 國務委員, 各院·部의 次官, 處의 處長, 次官 또는 次長, 庁長, 企劃調整室長, 行政調整室長,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 大使, 公使, 次官補.
- ④ 中央情報部의 部長, 次長 및 職員.
- ⑤ 原子力委員會常任委員, 訴請審査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 海難審判院의 院長 및 審判官, 各級勞動委員會常任委員.
- ⑥ 法官, 檢事, 教育公務員, 軍人, 軍屬
- ⑦ 秘書官, 秘書
- ⑧ 單純한 勞務에 従事하는 公務員
- ⑨ 其他 다른 法令이 別定職으로 指定하는 公務員(個別職 制에서 定하는 公務員)

〈 一般職 公務員 〉

一般職은 別定職을 除外한 國家各機關에 勤務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3)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



라. 公務員의 職級 및 職列

(1) 職位分類

- ① " 職位 " 라 함은 1 人의 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
- ② " 職級 " 이라 함은 職務의 種類, 困難性과 責任度가 相當히 類以한 職位의 群을 말하며 同一한 職級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任用資格試驗, 報酬 기타 人事行政에 있

어서 同一한 取扱을 한다.

③ "定級"이라 함은 職位를 職級에 配定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職列"이라 함은 職務의 種類가 類似하고 그 責任과 困難性的 程度가 相異한 職級の 群을 말한다.

(職列 区分表 参照)

(2) 一般職 公務員의 階級

- 1 級 (管理官)
- 2 級
 - ┌ 甲類 (理事官)
 - └ 乙類 (副理事官)
- 3 級
 - ┌ 甲類 (書記官)
 - └ 乙類 (事務官)
- 4 級
 - ┌ 甲類 (主 事)
 - └ 乙類 (主事補)
- 5 級
 - ┌ 甲類 (書 記)
 - └ 乙類 (書記補)

以上 9 等級으로 区分

○ 技能職 公務員

(3) 中央行政機關의 行政官庁, 補助機關 및 補佐機關의 職級配定

原則

- 長 官 - 國務委員
- 処 長 - 別定職 (長官級), 法制処長, 援護処長
- 次官, 次長, 庁長 - 別定職 (次官級)

- 庁의 次長 - 別定職國家公務員 (1 級相当)
- 次 官 補 - 別定職國家公務員 (1 級相当)
- 室 長 - 1 級國家公務員
- 局 長 - 2 級國家公務員
- 課 長 - 3 級甲類 國家公務員
- 担 当 官 - 2 級이나 3 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

(政府組織法 第 2 條 第 5 項)

* 別定職과 別定職國家公務員

別定職國家公務員이라 할 때는 그 別定職階級이 一般職의 1 級에서 5 級の 階級에 該當할 경우이고 別定職이라 할 때는 그 自体가 階級을 代身할 경우로 長官, 次官級 이 상일 경우임.

(例外 1) 室長이나 局長은 그 所管業務의 性質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 (各個別職制) 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으나 局長의 경우에는 各 中央行政機關마다 1 人을 超過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例外 2) 法務部の 室長, 局長, 課長 및 担当官은 檢事로 補할 수 있으며 國防部の 次官補 및 國防부와 兵務庁의 局長, 課長 및 担当官은 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政府組織法 第 2 條 第 6 項)

(例外 3 - 名称上 (室長, 局長, 課長) 의 例外

治安業務担当 補助機關 - 内務部次官 밑에 治安本部長, 部長, 課長

民防衛業務担当 補助機關 - 内務部次官 밑에 民防衛本部長, 局長, 課長

(政府組織法 第 2 條 第 7 項)

(例外 4 - 職級区分의 例外)

外務部公務員에 관한 法律이 制定될때까지 外務部の 次官補와 室長은 大使 또는 公使로, 局長은 1 級 또는 2 級 甲類인 一般職 国家公務員으로, 課長은 2 級 乙類 또는 3 級 甲類인 一般職 国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도록 함.

(政府組織法 附則)

3. 政府의 機構現況

가. 現在 中央行政機關 機構現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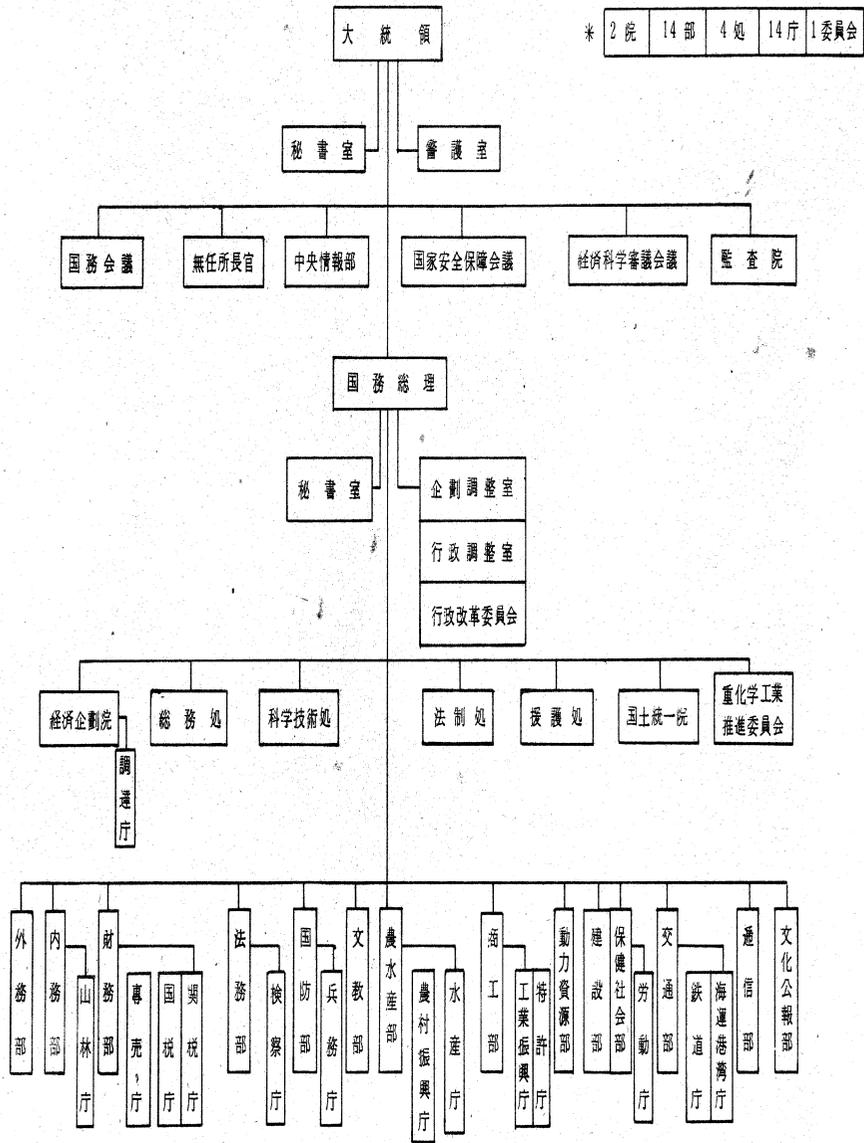
2 院, 14 部, 4 処, 14 庁, 4 外局, 1 委員會

- 2 院 : 經濟企劃院, 国土統一院
- 14 部 : 外務部, 内務部, 財務部, 法務部, 國防部, 文教部, 農水産部, 商工部, 動力資源部, 建設部, 保健社会部, 交通部, 通信部, 文化公報部

- 4 処：総務処，科学技術処，法制処，援護処
- 14 庁：山林庁，専売廳，調達廳，国税廳，関税廳，檢察廳，兵務廳，農村振興廳，水産庁，工業振興庁，労働庁，鉄道庁，海運港湾庁，特許庁
- 4 外局：調査統計局，水路局，電波管理局，文化財管理局
- 1 委員会：重化学工業推進委員会

나. 中央行政機關과 大統領 및 國務總理 直屬機關을 包含한 政府 機構圖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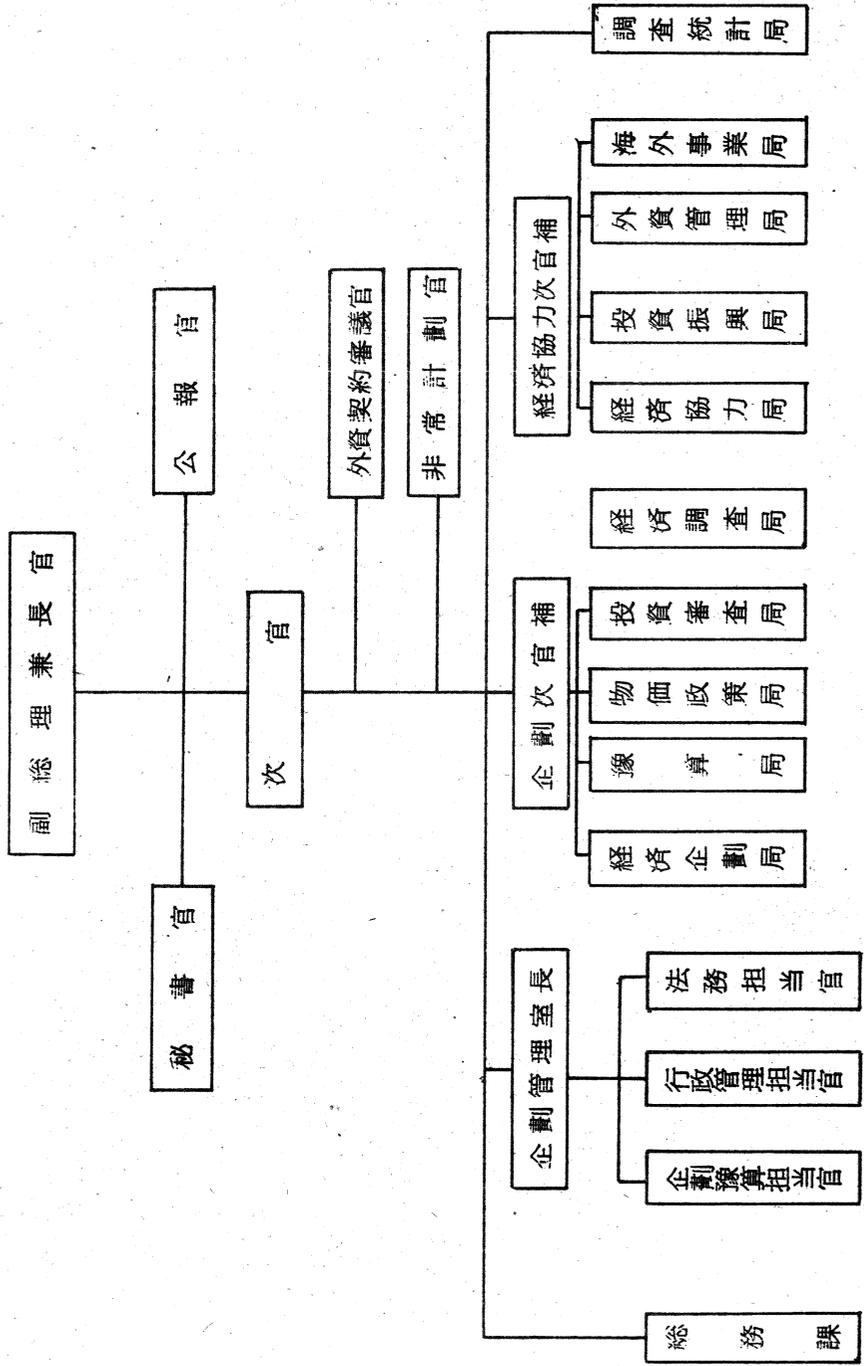
行政機構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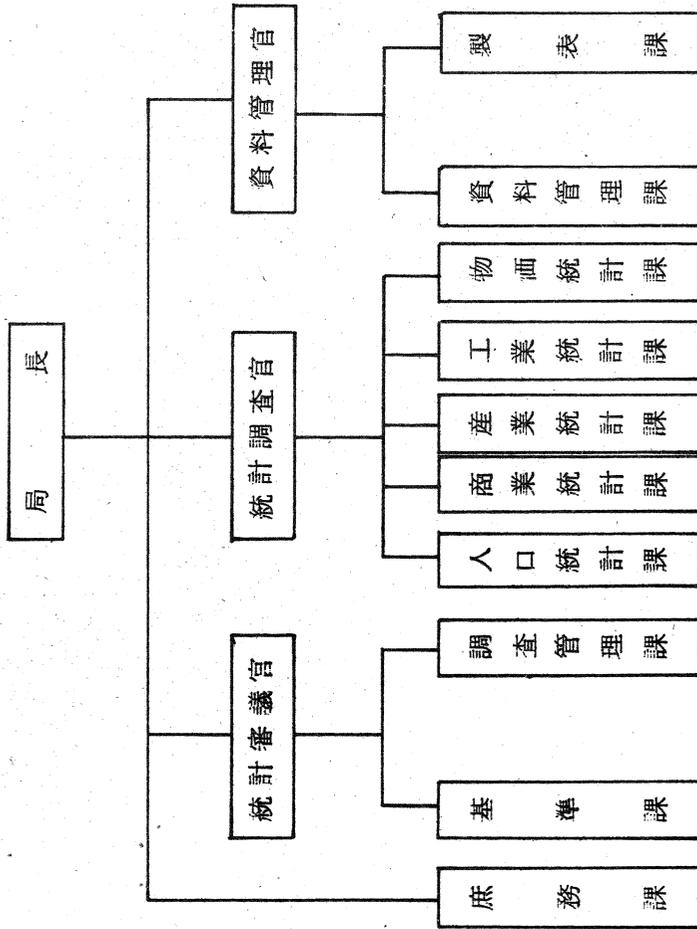
* 2院 14部 4処 14庁 1委員會

4. 經濟企劃院 機構 與 業務現況

가. 經濟企劃院 機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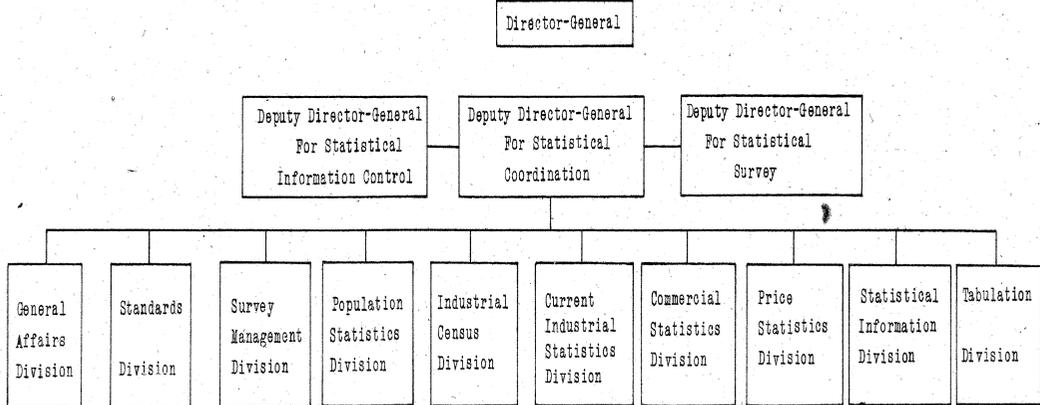
나. 調查統計局 機構表



地方統計事務所

京畿 (水原)	- 인천연락사무소
江原 (春川)	- 강릉연락사무소
忠北 (清州)	
忠南 (大田)	
全北 (全州)	
全南 (光州)	- 제주연락사무소
慶北 (大邱)	- 안동연락사무소
慶南 (釜山)	- 마산연락사무소

Economic Planning Board



- | | | | | | | | | | |
|------------------------------------|---|------------------------------------|--|------------------------------------|--|--------------------------------------|---|---|-----------------------|
| 1) Personnel Affairs | 1) Planning and Evalu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 1) Statistical Training | 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1) Mining and Manufacturing Census | 1) Current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 1) Current Inventory Survey | 1) Retail Price Survey | 1) Dissemination of Statistical Publication | 1) Programming |
| 2) Budgeting and Financial Affairs | 2) Establishment of Statistical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 2) Management of Field Enumerators | 2) Vital Statistics, Vital Registration and Current Demographic Survey | 2) Construction Survey | 2) Compilation of Industrial Indexes | 2) Compilation of Inventory Indexes | 2) Compilation of Consumer Price Index | 2) Management of Library | 2) Editing and Coding |
| | 3) Statistical Coordination | 3) Sample Design and Control | 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3) Transportation Census | 3) Compilation of Production Capacity & Operation rate Index | 3) Wholesale and Retail Trade Census | 3)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3) Development of Data Bank System | 3) Tabulation |
| | 4) Management of Statistical Council | | 4) Analysis of Demographic Data | | | | | | |
| | 5) International Statistical Affairs | | | | | | | | |

라. 經濟企劃院 業務現況

經濟企劃院은 國民經濟의 綜合的 開發計劃의 樹立과 發展, 豫算의 編成과 執行, 國內外的 可用資源의 動員과 投資를 爲한 計劃의 綜合的 調整 및 國內外的 國際機關과의 經濟協力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1) 本 庁

公報官 : 公報事務에 關하여 長官을 補佐한다.

外資契約審議官 : 經濟法令의 比較 研究 및 調整, 外資導入契約書의 事前審議를 하며 次官을 補佐한다.

非常計劃官 : 國家非常事態에 對備한 諸般計劃, 非常訓練, 職場豫備軍의 管理, 廳舍施設의 防護

總務課 : 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하며 保安, 官印管守, 公務員任用服務, 教育訓練 年金 및 其他 人事管理, 文書의 受發 統制, 文書管理, 豫算運用, 資金供給, 會計 및 決算, 物品管理.

企劃管理室 : 基本運用計劃의 運用, 豫算의 編成과 그 執行의 調整, 組織 및 定員管理, 業務 및 會計監查, 法令의 基礎審查, 訴訟事務 訴願의 審查, 經濟長官 案件의 調整 및 그 運營.

經濟企劃局：産業政策과 投資計劃의 總括，重化学工業 및 其他
基幹産業開發計劃의 總括，經濟政策 및 經濟企劃
의 綜合調整.

豫算局：財政政策의 企劃，立案 및 調整，豫算의 編成.

物價政策局：物價에 關한 基本政策의 樹立，主要物資 및 主
要資源의 需給과 備蓄計劃，各種物價調整.

投資審查局：投資事業의 審查基準 및 評答작성.
" 審查分析.

經濟調查局：国内外經濟動向에 關한 調查分析.
經濟關係資料 및 對外 弘報資料의 편찬 및 發
刊 月例經濟動向報告.

經濟協力局：外資導入政策 및 計劃樹立의 總括，海外經濟協力
事業，海外駐在官支援 및 各種國際會議 運營.

投資振興局：外國人投資誘致 計劃의 樹立，이와 關聯된 事項，
外國人投資의 認可 및 事後管理.

外資管理局：外資導入에 關한 事後管理，外資管理에 關한 政
策의 樹立 및 管理總括，借款統計의 健全화管理.

海外事業局：海外進出에 關한 綜合支援施策
海外進出에 關한 情報의 수집，分析 및 統計業務..

(2) 調査統計局

(가) 業務

統計業務의 全般的인 企劃, 統計基準의 設定 및 綜合調整과 人口統計, 産業統計, 商業統計, 物價統計等 主要經濟社会統計와 統計資料의 處理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나) 組織

調査統計局長은 理事官으로 補하고 局長 밑에 統計審議官, 統計調査官 및 資料管理官, 庶務課, 基準課, 調査管理課, 人口統計課, 産業統計課, 工業統計課, 商業統計課, 物價統計課, 資料管理課 및 製表課가 있다.

統計審議官, 統計調査官, 資料管理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하고 各 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統計審議官은 統計業務의 綜合的企劃, 統計基準의 調整 및 統計制度의 研究發展에 關하여 局長을 補佐한다.

統計調査官은 各種統計調査의 實施 및 方法에 關하여 局長을 補佐한다.

資料管理官은 統計調査資料의 集中管理, 處理 및 補給에 關하여 局長을 補佐한다.

(다) 各課의 業務

(1) 庶務課

庶務課는 保安, 官印管守, 文書受發, 統制, 保存, 四級以下公務員의 任用, 服務, 年金, 其他 人事管理 豫算運用, 會計 및 決算, 豫算의 編成 및 審査分析, 物品購買 및 調達,

物品管理.

② 基準課

各種統計調査의 基準設定 및 標準分類 統計用語의 定義, 統計委員會의 運營, 統計技術의 指導, 統計業務의 綜合的企劃 및 各級統計機關의 指導監督, 海外統計訓練 및 統計專門家의 交換.

③ 調査管理課

標本の 設計 및 管理, 統計地圖의 作成.
統計調査員의 指導監督, 局內統計訓練

④ 人口統計課

人口센서스 및 住宅센서스, 經濟活動人口調査.
人口動態統計, 人口移動統計.

⑤ 産業統計課

産業센서스 및 鉦工業統計調査, 建設業센서스, 運輸業센서스 및 産業構造에 關한 統計調査.

⑥ 工業統計課

鉦工業의 生産, 出荷 및 在庫에 關한 統計調査, 企業의 施設 및 稼動에 關한 統計, 生産, 出荷, 在庫, 稼動率, 指數와 各種 經濟指標의 편제.

⑦ 商業統計課

都小売業 動態調査 및 센서스, 百貨店調査, 都売業, 小売業, 販賣指數편제 및 음식점, 숙박업, 서어비스部門에 關한 統計.

⑧ 物價統計課

小売物價調査, 消費者物價指數편제, 家計調査와 家計의 所得 및 支出에 關한 統計.

⑨ 資料管理課

統計情報 및 資料의 集中管理와 데이타 Bank 運營, 各種 統計刊行物の 發刊, 國際統計資料 및 情報의 交換

⑩ 製表課

製表計劃 統計資料의 內容檢査, 印刷 및 檢査, 電子計算 機의 運營.

⑪ 統計事務所

各種統計調査에 關한 事務를 地域別로 管掌,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등 8個 地方事務所가 있다.

Ⅱ . 人事關係法令解説

1 . 人事行政의 定義	37
2 . 人事行政의 範圍.....	37
3 . 人事法令	38
4 . 国家公務員法의 概要	41
5 . 公務員의 權利・義務・責任	46

1. 人事行政의 定義

- 國家機關의 公職에
- 가장 適格한 者를 採用하고, 그들을
- 가장 効率的으로 維持 管理하기 위한
- 方法과 技術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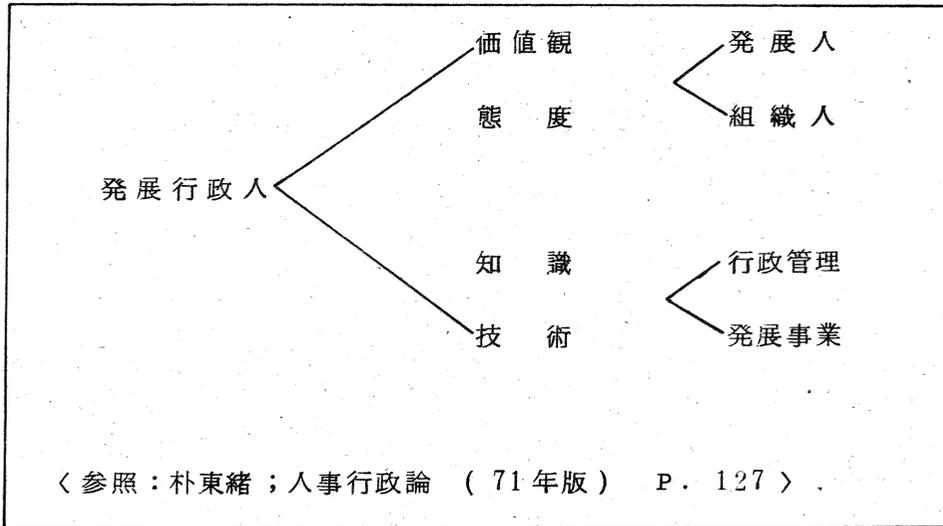
※ 人事管理란,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소망스런 方向으로 人的資源을 利用하여 最大의 業績을 내게 하는 技術이다.

2. 人事行政의 範圍

가. 人事行政의 3大變數

- (1) 有能人の 採用
- (2) 士氣
- (3) 能力開發

나. 發展行政人의 資質



3. 人事法令

- 人事法令은 人事行政을 規律하는 法令이며, 人事管理를 하는 基準이다.
- 人事法令은 복잡 다양하여 數十種이나 되며, 그 代表的인 것만을 例示하더라도 別表에 보이는 바와 같다.
- 人事法令은 人事事務를 担当하는 公務員만이 武器나 專有物이 아니다.
- 오늘날의 行政組織은 대규모로 복잡하게 擴大되고, 다시 수 많은 小集團으로 分化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小集團의 管理者의 地位에 있는 公務員은 自己保護의 武器로서, 또한 部下 職員의 管理를 為한 技術로서도 人事法令에 대한 知識이 필요하다.
- 바나드 (Chester I. Barnard)는 그의 著書 “管理者의 機能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組織體의 效率的運營을 為한 基本的 課題는 全職員으로 하여금 그 組織의 目的 達成에 協調하게 하는데 있다.”

〈別表〉 代表的인 人事法令

가. 基本法

- ① 國家公務員法

나. 關聯法律

- ① 公務員教育訓練法
- ② 公務員年金法
- ③ 賞勳法

다. 大統領令

- ①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② 契約職員規程

- ③ 雇傭員規程
- ④ 雜給職員規程
- ⑤ 公務員任用令
- ⑥ 公務員任用試驗令
- ⑦ 公務員身體檢查規程
- ⑧ 公務員服務規程
- ⑨ 公務員當直規程
- ⑩ 勤務成績評定規程
- ⑪ 提案規程
- ⑫ 公務員職務發明報償規程
- ⑬ 模範公務員規程
- ⑭ 公務員懲戒令
- ⑮ 訴請節次規程
- ⑯ 公務員海外駐在令
- ⑰ 公務員海外旅行規程
- ⑱ 行政監查規程
- ⑲ 人事監查規程
- ⑳ 公務員報酬規程
- ㉑ 在外公務員報酬規程
- ㉒ 公務員手当規程
- ㉓ 國內旅費規程
- ㉔ 國外旅費規程

라. 總理令

- ① 公務員 任用時의 打字能力檢定規程
- ② 公務員 勤務事項에 관한 規則
- ③ 公務員 昇進을 위한 評定規程
- ④ 公務員 証規則
- ⑤ 公務員 人事記錄 및 人事事務處理規則
- ⑥ 人事統計報告規則

○ 이 외에 部令, 訓令 및 例規 등으로 정한 것이 있다.

4. 國家公務員法의 概要

가. 制定

- (舊) 法律第 44 号 (49, 8, 12)
- (新) 法律第 1325 号 (63, 4, 17)

나. 國家公務員法의 目的 (第 1 條)

- 이 法은 國家公務員에게 適用할 人事行政을 確立하여
- 그 公正을 期함과 아울러
- 公務員으로 하여금
- 國民 全體의 奉仕者로서
- 行政의 民主的이며
- 能率的인 運營을 期하게 하는데 있다.

다. 性 格

- (1) 基準法으로서의 性格 : 人事行政의 根本基準 確立
- (2) 成績制度로서의 性格 : 成績主義原則에 의한 人事制度의 確立
- (3) 技術法으로서의 性格 : 人事行政 技術의 規範化
- (4) 保護法으로서의 性格 : 身分保障과 權益保障
- (5) 改革法으로서의 性格 : 科學的人事管理制度의 確立

라. 適用範圍

- 原則 : 一般職 公務員에게만 適用
- 例外 : 報酬와 服務에 관한 規定은 別定職 公務員에게도 適用

마. 公務員의 種類

- (1) 質
 - 國家公務員, 地方公務員
 - 一般職公務員, 別定職公務員
- (2) 層 - 1 級 ~ 5 級
- (3) 量 - 正規職公務員, 臨時職公務員

바. 中央人事機關 - 總務処

사. 任 用

(1) 任用의 意義 : 新規採用에서부터 免職까지의 身分上 變化의 總稱

(2) 任用權者 3 級以上 ; 大統領
其 他 ; 所屬長官

(3) 任用의 原則

- 平等取扱의 原則
- 実績主義의 原則
- 適格者任用의 原則

(4) 缺員補充方法

(5) 採用制度 - 公開競争採用 特別採用

(6) 昇進制度 {
○ 公開競争昇進試驗에 의한 任用
○ 特別昇進任用
○ 昇進候補者 名簿順에 의한 任用

(가) 昇進所要最低年數 :

- 3 級以上 - 3 年
- 4 級甲類 - 2 年 6 月
- 4 級乙類 - 2 年
- 5 級 - 1 年 6 月

(나) 昇進候補者名簿

- 3 乙 · 4 甲 - 1 月末 基準
- 4 乙以下 - 11 月末 基準

(ㄷ) 作成基準 - 評点制

- 勤務成績 40点
- 経歴評定 35点
- 訓練成績評定 25点
- 加点(褒賞・資格証 等) 0.3~2.5点

(ㄹ) 昇進任用의 制限

- 懲戒処分(終了日로부터 6~18月)
- 職位解除
- 休職

(7) 試驗制度

- 公開競争採用試驗
- 特別採用試驗
- 公開競争昇進試驗
- 特別昇進試驗
- 転職試驗

아. 報酬制度

※ 報酬의 構造

報		酬		
俸 給		調 整 手 当	期 末 手 当	其 他 手 当
職 務 給	勤 続 手 当			
本 俸	職責手当			

자. 能率增進

(1) 訓練制度

(2) 勤務成績評定制度

(3) 提案制度

○ 種類： 自由提案，指定提案，職務提案

○ 特典： 特別昇進，特別昇給，副賞 등

(4) 賞勳制度

(5) 保護，安全管理制度

차. 服務制度

(1) 服務宣誓

(2) 勤務時間

○ 4 ~ 10 月 ; 09 : 00 ~ 18 : 00

○ 11 ~ 翌年 3 月 ; 09 : 30 ~ 17 : 30

(3) 休 暇： 年暇，病暇，公暇，特別休暇

카. 公務員에 대한 社會保障

(1) 公務員年金制度

5. 公務員의 權利・義務・責任

가. 公務員의 權利

民主的 公務員制度 아래서는 公務員은 어떠한 特權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公務員은 一般國民으로서의 地位와 國家의 公的事務를 담당하는 國家機關 構成者로서의 地位의 二重的 地位를 가진다. 그러므로 公務員은 國民의 地位에서의 基本權을 가짐은 물론, 國家機關의 구성자인 地位에서 國家事務를 성실히 수행할 權利와 이에 부수되는 權利 등 一般 私인이 갖지 않는 權利를 가진다.

(1) 身分上的 權利

公務員 身分自体와 直接關係가 있는 權利를 말하는 것으로, 法律이 定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分을 박탈하거나(身分保障을 받지 않은 公務員은 例外이다), 기타의 不利益處分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職位에 속하는 職務를 執行하고, 職名을 使用하며, 소정의 制服을 착용할 權利를 가진다.

① 身分保有權

㉞ 憲法第 6 條第 2 項은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國家公務員法은 「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定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또한懲戒処分은 一定한 法定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法定節次에 의해서만 行할 수 있게 하였다.

㉔ 그러나, 一般職 公務員은 대개 身分保障을 받으나, 外務職 公務員을 除外한 1級 公務員과 試補任用中에 있는 公務員은 身分保障을 받지 못한다. 別定職公務員은 國務委員·次官·秘書 등과 같이 身分保障을 받지 못하는 者도 있으나, 法官·檢事·教育公務員·警察公務員 등과 같이 身分保障을 받는 者도 있다.

② 職務執行權 - 公務員은 그 職位에 속하는 職務를 執行할 權利를 가진다.

③ 職名使用權 - 公務員은 그 職位에 속하는 職名(理事官·局長等)을 使用할 權利를 가진다.

④ 制服着用權 - 服制가 있는 公務員(軍人·軍屬·경찰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방직공무원·세관공무원·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制服을 着用할 權利가 있다.

(2) 財産上의 權利

① 報酬請求權

報酬의 意義 - 報酬라 함은 봉급과 기타 各種 手當을 포함한 額을 말한다.

報酬의 種類 - 俸給과 手當

(3) 労働法上の 権利

公務員도 勤勞者이라는 하지만 그가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 내지는 그 地位의 特殊性(公務員은 全体国民에 대한 봉사자이며, 따라서 政府에 의하여 代表되는 国民全体の 고용인이다)에 비추어 憲法은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除外하고는 團結權, 団体交渉權 또는 団体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고 規定하고 또한 비록 法律로 인정된 者라 할지라도 団体行動權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4) 不利益処분에 對한 是正講求權

① 訴願 - 公務員은 징계처분 기타 그 意思에 反하는 不利益処分을 받은 때에는 訴請審査委員會에 訴請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公務員 年金法에 依한 給與에 關한 決定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公務員 年金給與審査委員會에 審査를 講求할 수 있다.

② 行政訴訟 - 위의 訴請에 對한 행정청의 決定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原処分 또는 原決定이 違法的인 경우에 한하여 取消・變更을 구하는 行政訴訟를 提起할 수 있다.

나. 公務員의 義務

國家公務員法은 一般職公務員에게 다음과 같은 共通된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宣誓義務・誠實義務・職務上義務・身分上義務 등으로 나눈다.

(1) 宣誓義務

國家公務員(一般職과 別定職)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本人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責任과 祖國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法令 및 職務上의 命令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責務를 다할 것을 엄숙히 宣誓합니다.」라고 선서하여야 한다.

(2) 誠實義務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誠實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는 公務員의 義務中 가장 中核的이며 倫理性이 강한 것으로 公務員 義務의 원천이 되는 基本的 義務 내지 服務의 根本基準으로서, 各種의 職務上義務는 물론이고 職務外의 義務도 여기에서 流出된다고 할 수 있다.

(3) 職務上義務

- ① 法令遵守義務 -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法令違反은 違法行爲 또는 不法行爲로서
行爲의 効力의 否認, 손해배상, 처벌, 징계 등의 원인이 된다.
- ② 服從義務 -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職務上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③ 職務專念義務 - 公務員은 全力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㉑ 職場離脱禁止 - 公務員은 소속상관의 許可나 正當한 이유 없이 職場을 離脱하지 못한다. 이는 근무시간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時間外 勤務命令이 있는 경우에도 成立한다.
- ㉒ 營利業務 및 兼職의 금지 - 公務員은 公務以外的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許可를 받아도 할 수 없다), 소속기관장의 許可없이 다른 業務를 兼하지 못한다.
- ㉓ 榮譽制限 - 公務員은 大統領의 許可없이 外國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지 못한다.
- ㉔ 政治活動禁止 - 公務員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기 때문에, 憲法은 그 政治的 中立性을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㉕ 集團行動의 禁止 -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認定된 者를 除外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다만, 事實上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務員에 對하여는 例外로 認定하고 있다.

(4) 親切公正義務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公私를 分別하고 人權을 尊重하며, 親切公正하게 執務하여야 한다.

이는 單純한 道德上의 義務만이 아니고 法的義務인 것이다.

(5) 秘密嚴守義務

公務員은 在職中은 물론 退職後에라도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隱守하여야 한다.

(6) 身分上 義務

㉔ 品位維持義務 - 公務員은 職務의 内外를 不問하고 그 品位를 손상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㉕ 清廉義務 - 公務員은 職務와 關聯하여 直接 또는 間接을 不問하고 賄賂, 贈與, 향응을 授受할 수 없으며, 職務上 關係如何를 不問하고 그 所屬上官에게 贈與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義務의 違反은 징계사유는 물론 刑法上의 贈收賂罪를 구성한다.

다. 公務員의 責任

公務員의 責任에는 징계책임과 弁상책임이 있다.

(1)懲戒責任

㉗ 징계사유 - 國家公務員法 및 同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했을 때, 職務上 義務를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직무의 内外를 不問하고 品位損傷時

㉘ 징계의 종류

排除懲戒로서 罷免(身分에서 排除)과 矯正 懲戒로서 減俸(1月~6月까지 報酬의 1/3)과 譴責이 있다.

㉙懲戒委員會의 設置와 管轄

公務員의 징계는 管轄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行하여야 하는바 懲戒委員會는 國務總理所屬下의 中央懲戒委員會(3級以上 懲戒事件)와 3級以上の 公務員을 長으로 하는 行政機關에 두는 普通懲戒委員會(4級以下 懲戒事件)의 2종이 있다.

㉚懲戒委員會의 構成

中央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總務次長官)과 委員 6人(次官級)으로 構成한다.

普通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設置機關의 長의 次順位者)과 委員 4~7人(懲戒對象者의 上位級類 公務員中에서 最大順位로부터)으로 構成한다.

㉛懲戒節次

公務員에 對한 懲戒는 懲戒議決要求權者의 要求에 依하여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權者가 行한다.

懲戒를 行할 때에는 懲戒權者가 懲戒処分事由說明書를 相手方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3級以上 公務員에 對한 罷免의 경우에는 임용제청 권자가 이를 交付한다.

懲戒委員會의 議決은 中央懲戒委員會는 接受日로부터 60日 以內, 普通懲戒委員會는 接受日로부터 30日 以內에 하여 公務員의 權益保障을 爲하여 진술권, 증거제출권, 증인 신청권 등의 權利가 保障되어 있다.

㉞ 懲戒에 對한 救濟

懲戒處分을 받은 公務員은 訴請審査委員會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에 있어서는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 적용된다.

또한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違法을 理由로 한 경우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㉟ 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이는 常設合議制機關으로서 總務處에 設置하고 委員長 1人, 委員 6人~7人(1級 相當 別定職)으로 構成한다.

(2) 辨償責任

辨償責任이란 公務員이 그 義務를 違反함으로써 國家에 對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경우에, 使用者인 國家에 對하여 國家賠償法 또는 會計關係職員等の 責任에 關

한 法律 등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는 損害賠償責任을 辨償責任이라 한다.

辨償責任에는 「國家賠償法」上 辨償責任과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에 의한 會計關係職員等의 辨償責任으로 나눌 수 있다.

㉔ 國家賠償法上 辨償責任

公務員이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國家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고, 이 경우 國家는 公務員에 對해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求償할 수 있으며, 營造物 設置管理 혹으로 인하여 他人에게 發生한 損害를 國家가 賠償한 경우에, 公務員에게 그 原因에 對한 責任이 있을 때에는 國家는 그 公務員에게 求償할 수 있다.

㉕ 會計關係職員 등의 辨償責任

豫算會計法은 會計關係職員의 責任에 關하여 따로 法律로 定하도록 하였고, 物品管理法은 物品管理公務員과 物品使用公務員에 對하여 따로 法律로 定하도록 하였으며,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은 會計關係職員 등의 辨償責任의 成立要件 有無 및 賠償額의 判定과 그 行使方法에 關하여 규정하고 있다.

辨償責任의 有無 및 賠償額의 判定과 그 行使方法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辨償命令으로, 또는 감사
원이 한다.

Ⅲ. 文 書 管 理

1. 公文書作成 要領	59
2. 文書受発 節次	62
3. 報 告 統 制	64
4. 公文書の 書式	67
5. 文書の 保存・保管	68
6. 차트의 作成果 報告 (부리평) 要領	70

1. 公文書作成 要領

가. 公文書의 定義

- (1) 機關內部 및 機關間 施行文書
- (2) 對外的으로 施行한 文書
- (3) 行政機關이 接受한 私文書
- (4) 文字로 表記한 通常의 文書
- (5) 그림, 写真等

나. 一般事項

- (1) 用 紙…………原則적으로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68밀리미터의 白色用紙를 세워서 使用한다. 다만, 圖面, 統計表, 證明類等은 例外로 한다.
- (2) 用 語…………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되, 표준말을 使用한다.
- (3) 數 字…………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한다.
- (4) 年月日…………數字로 表示하며 點을 찍어 年, 月, 日을 区分한다.
- (5) 時 間…………24時間制에 의하여 두 點은 찍어 時:分을 区分한다.
- (6) 修正의 表示…………修正한 곳에 修正者가 捺印하며 重要的 修正時는 加除한 字數를 欄밖에 表示하고 捺印한다.
- (7) 特別한 文書에 對한 表示

(가) 管理統制……機關長이 꼭 알아야 하거나, 直接 處理해야 할 文書에 表示한다.

(나) 至 急……迅速히 傳達되거나 處理되어야 할 文書에 表示하며, 봉투를 使用할 때는 봉투 表面에도 表示한다.

다. 起案 및 決裁

(1) 起案者…… 3 級以上の 公務員 또는 担当官이 起案한다.

(2) 起案의 種類

(가) 一般起案……對外的으로 施行할 文書의 起案

(나) 内部決裁文書……受信欄에 "内部決裁" 또는 "報告"로 表示한다.

(다) 修正起案……受信한 文書에 紅色잉크로 修正事項을 記入한다.

(라) 一括起案……相互關聯있는 文書を "第1案", "第2案"으로 区分하여 起案한다.

(3) 決裁權者

(가) 行政機關의 長

(나) 權限을 委任 또는 委託받은 補助機關

(다) 權限을 内部委任받은 專決權者

(라) 決裁權者의 職務를 代行할 수 있는 者

(4) 起案時 留意事項

(가) 當該業務 및 關聯業務를 徹底히 把握한다.

- (나) 關係法規와 例規等을 熟知한다.
- (다) 處理된 先例를 參照한다.
- (라) 協調해야 할 關聯部署의 有無를 確認한다.
- (마) 簡潔하고도 明瞭한 表現方法을 驅使한다.

라. 文書의 構成

(1) 發信文書의 構成

- (가) 頭文…………發信機關名, 分類記号 및 文書番号, 施行年月日
受信機關
- (나) 本文…………題目 및 內容
- (다) 結文…………發信者名義 및 受信處欄

(2) 分類記号와 文書番号

- (가) 機關記号…………課 또는 担当官單位로 定하되, 처음의 두音節을 따서 使用한다. 다만, 같은 記号가 있을 때에는 둘째 音節 代身, 셋째 音節을 使用한다.
- (나) 文書分類番号…………機能別分類(1次)와 10進式分類(2次以下)에 依한다.
- (다) 文書番号…………年度別 一連番号로 한다.

(3) 發信名義

- (가) 通常의 文書…………機關의 長의 名義
- (나) 權限의 委任, 委託時…………委任 또는 委託받은 者의 名義로 하되, 發信名義의 위에 * 權

限의 委任(委託)을 받아, 의
表示를 한다.

(다) 專決 또는 代決時.....機關의 長의 名義로 하되 發信
名義 밑에 專決者 또는 代決者의
表示를 한다.

2. 文書受發節次

가. 接 受

(1) 文書課.....文書受發事務를 總括하며 文書에 對한 統制機能
을 遂行한다.

(2) 文書處理印.....接受된 文書에 찍어 主務課로 移送한다.
다만, 經由文書에는 文書處理印 代身, "經由"
表示를 한다.

(3) 供 覽.....主務課長은 文書處理印欄을 記入한 後, 先決
供覽을 받는다.

(4) 處理指示.....供覽時에 先決權者는 그 文書의 處理期限,
處理方法 및 處理担当者等을 指示한다.

나. 施 行

(1) 施行方法.....다음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電信, 電信打字 또는
電話로 施行한다.

(가) 事實 또는 法律關係의 證明에 關係되는 文書

(나) 許可, 認可, 登錄等 民願關係文書

(타) 添附物이 있거나 金錢, 物品會計의 根拠文書

(리) 電信施設이 없거나, 不得已한 경우의 施行文書

※ 秘密 또는 保安上 重要文書を 電信, 電信打字 또는 電話로 送信할 때에는 暗号 또는 陰語로 하여야 한다.

(2) 官報……官報로서 施行文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官報本文 마지막에 “이 内容에 關한 施行文은 따로 보내지 않음”이라고 쓴다.

(3) 報告文書……計算書, 統計表, 函表等の 報告文書는 施行文을 省略하고, 報告書에 発信名義欄을 設定하여 官印捺印後 施行한다.

(4) 帳簿에 의한 處理……輕微한 事項의 許可, 認可, 證明書交付 등에 關한 文書는 起案을 省略하고 帳簿에 記入, 處理할 수 있다.

다. 發 送

(1) 文書受發의 原則……行政組織上の 系統에 따라 発信한다. 다만, 單純한 資料要求, 業務連絡, 通報, 質疑応答等の 경우는 例外이다.

(2) 發送方法……人便, 郵送, 電信, 電信打字 또는 電話

(3) 備置台帳

(가) 受發台帳 및 送受信簿……文書課

(나) 文書補助台帳……主務課

(4) 秘密文書の 送信……送信文의 題目末尾 및 本文의 “ 끝 ”

다음에 秘密等級 表示를 하여야 한다.

3. 報 告 統 制

가. 報告統制의 目的

機關과 機關間에

(1) 口頭, 書面 또는 通信으로 傳達되는 報告에 對하여

(2) 그 信憑性과 適時性을 保障하고

(3) 報告行政의 簡素化와 經濟性을 期하는데 있다.

나. 定期報告

(1) 定期報告의 指定

(가) 總理令……中央行政機關이 그 所屬機關, 他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받는 報告

(나)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訓令……中央行政機關의 1次所屬機關 또는 서울特別市, 釜山市, 道가 그 下部機關으로부터 받는 報告

(다) 直近監督機關의 長의 訓令……中央行政機關의 2次所屬機關 또는 市, 郡이 그 下部機關으로부터 받는 報告

(2) 定期報告의 種類 및 提出期日

- (가) 即 報…… 2 日 以內
- (나) 日 報…… 3 日 以內
- (다) 週 報…… 다음週 火曜日 以前
- (라) 旬 報…… 다음旬 4 日 以前
- (마) 半月報…… 同月 20 日 및 翌月 5 日 以前
- (바) 月 報…… 翌月 10 日 以前
- (사) 期 報…… 翌月 15 日 以前
- (아) 半年報…… 7 月 20 日 및 1 月 20 日 以前
- (자) 年 報…… 翌年 1 月 末 以前

다. 1 回報告

(1) 報告統制의 要求時期

主務課長의 決裁後, 最後決裁權者가 決裁하기 前에 統制를 받아야 한다.

(2) 統制審査基準

- (가) 報告의 目的 및 必要性
- (나) 報告期日 또는 種別
- (다) 他報告와의 類似重複 与否
- (라) 報告作成機關의 適正性 与否
- (마) 報告書式의 合理性 与否
- (바) 既存資料에 의하거나, 自体機關內에서 收集 可能性 与否

(3) 調査報告의 要求期間

- (가) 中央行政機關相互間…………… 5 日以上
- (나) 中央行政機關과 1次所屬機關間…………… 7 日以上
- (다) 第 1次와 2次所屬機關間…………… 7 日以上
- (라) 第 2次와 3次所屬機關間…………… 5 日以上

라. 非指定報告

- (1) 對共情報 및 諜報活動과 犯罪搜查 및 訴訟狀況에 關한 報告
- (2) 作戰, 警戒警備 및 危險災害에 關한 報告
- (3) 秘密로 分類된 報告
- (4) 民願事務處理에 關한 報告
- (5) 一定期限까지 回示가 없으면 該當이 없는 것으로 看做處理하는 事實與否를 照會하는 報告
- (6) 其他 總務處長官이 特히 定하는 報告

바. 報告統制官

(1) 全体報告統制官

- (가) 總務處長官이 總務處所屬 公務員 中에서 任命한다.
- (나) 報告統制에 關한 事務를 總括한다.
- (다) 中央行政機關이 他中央行政機關, 서울特別市, 釜山市 또는 道로부터 받는 1回報告를 統制한다.

(2) 中央報告統制官 및 自体報告統制官

(가) 中央報告統制官……中央行政機關에 두되 企劃管理室長이 된다.

(나) 自体報告統制官……中央行政機關 以外の 行政機關에 두되, 機關長이 3級公務員 中에서 任命한다.

(다) 自体機關 및 所屬機關에 對한 報告統制事務를 監督하고, 全体報告統制官의 統制事項以外的 自体機關의 1回報告를 統制한다.

4. 公文書의 書式

가. 書式의 種類

(1) 要式書式(B)……그 作成要領만 定하는 書式으로서 報告書式 또는 民願書式에 該當되지 않는 것.

(2) 備置簿冊 및 카-드類(C)……事務用帳簿 및 台帳과 카-드類의 書式

(3) 報告書式(D)……報告의 內容을 記載하는 書式

(4) 民願書式(E)……民願事項 提出時에 使用하는 書式

(5) 一般書式(A)……上記以外の 書式

나. 書式制定의 承認

(1) 國務總理(經由)……中央行政機關 및 서울特別市の 書式

- (2) 中央行政機關의 長…………그 所屬機關의 書式
- (3) 內務部長官…………서울特別市 以外的 地方自治團體의 書式
- (4) 文敎部長官…………서울特別市, 釜山市와 道の 敎育委員會의 書式

다. 書式制定의 基準

- (1) 用紙의 規格과 色彩는 公文書와 같다.
- (2) 既承認된 書式과 類似, 重複된 것은 統合調整한다.
- (3) 紙質은 新聞用紙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가) 永久保存書式과 外交關係書式
 - (나) 賞狀等 尊嚴의 表示를 要하는 書式
 - (다) 有価証券이나 證明書等
 - (라) 兩面을 使用하는 備置簿冊
 - (마) 反復 또는 修正記載를 要하는 書式
 - (바) 其他 特殊目的을 為한 書式

5. 文書의 保存, 保管

가. 文書의 保存

- (1) 公文書 保存期間의 種別策定基準(總理令)에 依拠하여, 年度別, 分類番號別, 保存期間別로 区分 保存한다.
- (2) 永久 및 準永久保存文書…………政府記錄保存所에 移管保存한다
다만 隨時 閱覽을 要하는 文書는 3年까지 各 機關別로 保

存한다.

(3) 10年以下の 保存文書……各 行政機關別로 保存한다.

(4) 保存期間에 不拘하고 年末에 廃棄할 文書

(가) 法規文書の 草案

(나) 經由文書の 副本

(다) 所管이 아닌 文書

(5) 支出証憑書の 副本…… 5年間 保存

나. 文書の 保管

(1) 文書管理의 方法

(가) 集中管理…… 文書課에서 集中保存한다.

(나) 分散管理…… 5年以上 保存文書는 文書課에서 集中保存하
고, 3年以下の 保存文書는 各 主務課에서
保存한다.

(2) 未決文書の 保管

文書の 發生順序에 따라 編綴, 保管하되 担当者別로 保管한
다.

(3) 特殊文書の 保管

有添物中 分量이 많은 印刷物이나 冊子等은 別途로 保管한
다.

다. 文書의 廢棄

- (1) 保存期間의 經過文書.....保存文書記録台帳에 廢棄日字를 記入한 後 廢棄한다.
- (2) 秘密文書.....豫告文 또는 施行機關의 通報에 의하여 廢棄한다.
- (3) 機關內 往復文書의 施行文.....完結即時 廢棄한다.
- (4) 秘密文書 또는 特別한 文書아닌 廢棄文書는 再生 活用한다.

6. 차 - 트의 作成과 報告 (부리핑) 要領

가. 차 - 트作成의 必要性

(1) 부리핑의 目的

要點 中心으로 視覺과 說明을 並行함으로써

- (가) 被報告者의 理解를 增進시킨다.
- (나) 政策決定이나 狀況把握을 容易하게 한다.
- (다) 多數人의 同意를 同時에 求한다.

(2) 차 - 트의 必要性

- (가) 報告事項이 量的으로 많은 경우
- (나) 報告內容이 複雜한 경우
- (다) 짧은 時間內에 狀況의 判定 또는 同意를 要하는 경우
- (라) 被報告者의 數가 많은 경우

나. 차-트의 作成要領

(1) 차-트의 種類

- (가) 넘기는 차-트와 판자 차-트
- (나) 大型차-트와 미니차-트

(2) 規格………通常은 全紙의 크기로 하고 用途에 따라 適宜 調節한다.

(3) 紙質………通常 中質紙로 한다.

(4) 原稿整備

(가) 原則: 視覺의 效果를 最大限 나타낼 수 있도록 作成한다.

(나) 重要部分을 拔萃하여 報告分量을 縮小한다.

(다) 緊要度에 따라 配列을 調整한다.

(라) 題目 또는 副題目으로 報告事項의 輪廓을 把握할 수 있도록 한다.

(마) 物量을 나타낼 때는 統計表나 圖表를 活用한다.

(바) 物量以外의 事項을 表示할 境遇에도 可能한 限 그림이나 圖表化한다.

(5) 表現方法………敘述式을 止揚하고, 個條式으로 簡潔하게 한다.

(6) 文字의 크기

(가) 題目이나 重要部分은 多少 크게 한다.

(나) 全紙차-트인 경우, 16行程度 配列한다.

(7) 色度………2~3度色 程度로 한다. (그림이나 圖表는 例外)

(8) 主要한 計數나 質問이 豫想되는 細部的 事項은 別途로 準備한다.

(9) 題目이나, 問題點 또는 重要部分은 色度를 달리하거나, 밑줄을 친다.

다. 부리 - 핑 要領

(1) 차 - 트의 位置……被報告者 中心으로 하되, 陪席者의 數와 그 座席配列을 考慮하여 定한다.

(2) 姿勢……端正한 服裝과 沈着한 態度를 가진다.

(3) 音聲……被報告者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되, 事務室의 크기와 被報告者와의 距離를 考慮하여 聲量을 調節한다.

(4) 表現……正確하고 簡潔하게 하며 말 끝을 흐려서는 안된다.

(5) 차 - 트棒 짚기……3 ~ 4行 程度를 한 몫으로 하여 짚되, 차 - 트의 中間以下를 짚을 때는 行의 끝部分만 짚는다.

(6) 被報告者가 報告받지 않는 狀況일 때는 說明을 中斷하고 기다린다.

IV. 庶政刷新

1. 庶政刷新의 歷史的 背景	75
2. 庶政刷新의 意義	77
3. 庶政刷新의 必要性	79
4. 公務員 社会 속에 서의 庶政刷新의 对象	82
5. 社会不條理 除去	85
6. 庶政刷新 推進의 精神 姿勢	86
7. 庶政刷新의 推進責任	88
8. 結 論	89

1. 庶政刷新의 歷史的 背景

우리나라는 36年間 日本植民地 統治를 거쳐 1945年에 解放을 맞이하였으나 不幸히도 38線을 境界로 民族과 國土가 兩分되는 悲運을 맞이했다.

1948年에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으나 相當한 期間동안 國際政治의 冷戰構造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더구나 國土兩斷과 共產主義의 威脅속에서 自由黨政權은 團結을 先導하기 보다는 分裂狀態에서 腐敗와 無能과 停滯만을 거듭했었다. 1960年의 4·19 義舉는 바로 이와같은 自由黨政權의 不正과 腐敗에 抗拒하는 一大 國民運動의 蠟燭을 치켜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執權한 民主黨 亦是 無能과 腐敗에 젖어들어 새로운 民族的 危機를 自招하는 一大 混亂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混亂을 통해 共產主義者들의 間接侵略은 날로 激化되고 感傷的인 統一論에 젖어 反共態勢가 解弛되는 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救國을 爲해 必然的으로 찾아온 것이 5·16 革命이었다. 革命政府는 自主國防, 經濟建設, 社會正義 具現 그리고 民主社會의 建設이라는 旗幟를 내걸고 國政全般에 걸친 一大改革을 斷行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모든 分野에 걸친 國力增強을 爲한 政治行政力을 再整備 強化하여 祖國近代化와 民族中興의 基礎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民族中興을 向한 國力培養의 大前進은 外的으로는 北傀의 繼續的挑發과 內的으로는 自由를 憑藉한

無秩序와 放縱等으로 国力의 成長을 沮害하였으며 国力의 浪費까지 招來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内外情勢의 激變에 効率的으로 對処하고 잘못된 點을 除去하여 浪費를 없애고 国力을 組織化하며 能率을 極大化하고 祖国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의 繁榮을 이룩할 수 있는 自主的 民主體制를 確立하기 爲하여 英斷을 내렸던 것이 곧 10月維新이었다.

또한 朴正熙大統領閣下의 提唱에 依하여 1970年부터 始作된 새 마을運動은 그동안 工業化過程에서 희생되었던 農漁村을 近代化시켰으며 잠자던 國民의 精神을 일깨우는데 커다란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成果에 滿足할 수 만은 없었다.

祖国近代化의 大課業을 完成하기까지는 아직도 수 많은 건너야 할 江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不正腐敗의 一掃에 依한 社會正義의 具現과 健全한 國民精神의 振作이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國政 및 社會一角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痼疾的인 不條理는 国力을 蝕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總和를 沮害하여 國家安保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實情에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75年 3月 22日 朴正熙大統領閣下께서는 國民總和를 爲해 庶政刷新의 強力한 推進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庶政刷新은 5·16革命과 10月維新, 그리고 새마을運動으로 이어지는 一貫된 救國理念의 發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淵源을 "새 祖国建設"에 두고 있는 것이다.

2. 庶政刷新의 意義

庶政刷新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公共社会에서 執行되는 모든 業務를 올바르게 能率的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行政維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와 國民을 爲해서 執行되는 業務나 行政은 바로 公務員이 担当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庶政刷新 作業은 마땅히 公務員이 앞장서고 公務員社会에서부터 이룩해 나가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執行되는 行政이 올바르게 能率的인 庶政인가?

그것은 첫째로, 法律의 規定과 立法精神, 따라 執行되는 公正한 行政이어야 한다. 즉 法律規定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法律을 그릇 解釋해서 執行하여서도 안되며 法律이 편파적으로 不公平하게 適用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둘째로, 國民을 爲한 奉仕行政이어야 한다. 支配的인 姿勢를 버리고 國民의 公僕이라는 信念下에 親切하게 奉仕하는 行政이어야 한다.

세째로, 能率的인 行政이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恒常 創意的이고 能動的이며 積極的이어야 한다.

네째로, 明朗하고 健全한 行政이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金品 授受와 같은 不正이 없어야 한다.

以上과 같이 公正하게 그리고 親切하고 能率的이며 明朗하게 處理되는 奉仕行政을 됨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받을 수 있도록 業務

를 處理해 나가는 것이 庶政刷新이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르고 能率的인 行政을 沮害하는 모든 要因을 뿌리뽑은 作業이 庶政刷新作業인 것이다.

이와같이 올바르고 能率的인 行政 즉 庶政刷新을 沮害하는 主要 要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公務員의 不誠實한 精神姿勢, 對民行政에 있어서의 不親切한 態度, 非能率的이며 無事安逸主義의 消極的인 勤務態度, 行政制度의 不合理와 缺陷, 不正, 非違, 非能率을 誘發할 수 있는 公私生活의 周辺環境 等인 것이다.

이와같은 要因들을 除去하고 뿌리뽑는 일이 庶政刷新作業인데 이와같은 國政의 沮害要因을 크게 나누면 다음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하나는 公職者의 不正, 腐敗等의 不條理이고, 또 하나는 國政의 能率化를 沮害하는 浪費, 無事安逸主義等의 要因이다.

따라서 庶政刷新作業으로 公務員社會의 모든 不條理를 一掃하여 國民의 信賴를 받는 行政을 떠나가는 한편 國政能率이 極大化되도록 精神姿勢와 勤務姿勢를 確立해 나가야 한다.

庶政刷新을 土着化시켜 다시는 官紀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爲 하여는 公務員과 함께 모든 國民이 健全한 國民精神을 振作시키고 社會全般의 不條理, 非能率도 同時에 剔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庶政刷新에는 一般社會의 不條理 除去도 當然히 包含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庶政刷新은 좁은 意味에서는 公務員社會의 不條理를 뿌리 뽑고 國政을 能率的으로 遂行하는 官紀確立을 뜻하지만 넓은 意味에서는 社會全般에 걸친 不條理와 非能率을 除去하기 위한 社會淨

化運動이며 健全하고 明朗한 國民精神을 振作시키는 精神改革運動인 것이다.

따라서 庶政刷新은 國家的 次元에서 보면 國家의 存亡에 直結되는 救國運動이며 富強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精神革命運動인 同時에 조용한 社會革命運動이라 볼 수 있고, 公務員의 次元에서 보면 훌륭한 公務員社會를 이룩하기 위한 새마을運動이며 公務員意識構造改造運動이요, 價值觀 定立運動, 體質改造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3. 庶政刷新의 必要性

歴史的으로 볼 때 國家가 亡하는 要因에는 外侵에 依한 敗亡과 内部의 腐敗와 分裂에 依한 自滅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래여 歴史를 더듬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루 아침에 亡하게 된 越南事態를 들 수 있다.

越南政府는 政治的으로 腐敗하여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받지 못하였고, 國論은 分裂되어 國民이 團結하지 못하였으며 共產軍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도 官紀는 極度로 解弛해져 公務員은 不正을 서슴없이 자행했고 軍人은 軍需物資를 蓄財를 爲해 팔았으며 頹廢風潮는 팽배함으로써 끝내는 國民總和體制가 붕괴되면서 自滅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歴史를 보더라도 百濟는 王族의 荒淫逸樂과, 指導層의 腐敗로 自滅하였고 高句麗 亦是 貴族社會의 腐敗와 分裂로 敗亡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기 爲해 지금 庶政刷新作業을 強力하게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庶政刷新의 必要性은 크게 나누어

첫째, 公務員의 紀綱確立을 爲해 必要한 것이다. 公務員社會의 不正과 非能率을 갈끔히 없애므로써 信賴받는 公務員像을 確立하기 爲해서는 公務員의 紀綱이 確立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國政의 能率化를 爲해서 必要하다.

國政을 能率化하려면 庶政刷新을 통해서 國政을 直接 担当하고 있는 公務員들이 勤務姿勢를 바로잡고, 非能率要素를 除去하고 無事安逸主義를 스스로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國家安保를 爲해서도 必要하다.

우리는 지금 周邊情勢의 激動과 試鍊속에서 赤化統一을 노리는 北傀의 南侵威脅에 直面하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虛点인 것이다. 그 虛点이란 防衛態勢의 弱화와 內部分裂인 것이다. 이러한 虛点을 없애기 爲해서는 政府와 國民의 一體感이 造成되고 모든 國民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總和體制의 구축을 爲해서 庶政刷新은 時急히 推進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健全한 國民精神振作을 爲해서 必要하다. 우리는 60年代以後 놀라우리만큼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物質爲主의 經濟成長과 急速한 開發政策 遂行過程에서 拜金·利己·頹廢風潮等의 反社會的 價值觀이 形成되어 國民精神이 解弛해졌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國民總和를 害치고, 祖國近代化課業의

成 就 를 가 로 막 는 沮 害 要 因 이 되 는 것 이 다 .

따 라 서 우 리 는 健 全 하 고 建 設 的 인 國 民 精 神 을 振 作 하 여 國 力 培 養 을 加 速 化 하 고 새 로 운 價 值 觀 을 確 立 하 는 精 神 革 命 이 이 루 어 져 야 하 는 것 이 다 . 庶 政 刷 新 을 精 神 改 革 運 動 으 로 昇 華 시 켜 나 감 으 로 써 國 民 精 神 은 스 스 로 振 作 될 것 이 다 .

다 섯 째 , 不 條 理 없 는 개 껏 하 고 明 朗 한 社 會 를 建 設 하 기 為 해 서 必 要 하 다 .

庶 政 刷 新 은 公 務 員 社 會 의 非 違 와 不 條 理 뿐 만 아 니 라 一 般 社 會 의 不 條 理 와 非 能 率 도 없 애 자 는 데 그 目 的 이 있 다 . 우 리 는 庶 政 刷 新 을 強 力 히 推 進 하 여 모 든 不 條 理 를 一 掃 剔 抉 함 으 로 써 明 朗 한 社 會 를 建 設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여 섯 째 , 民 族 中 興 을 이 룩 하 여 富 強 한 나 라 를 만 들 기 為 해 서 必 要 하 다 .

우 리 는 民 族 中 興 을 이 룩 하 기 為 하 여 10 月 維 新 을 斷 行 하 였 고 또 새 마 을 運 動 을 汎 國 民 的 으 로 推 進 하 고 있 다 . 10 月 維 新 과 새 마 을 運 動 을 推 進 하 고 있 는 重 要 한 課 題 가 國 政 의 能 率 化 와 國 力 培 養 의 加 速 化 , 社 會 不 條 理 의 剔 抉 과 健 全 한 國 民 精 神 의 振 作 인 것 이 다 .

이 러 한 課 題 들 을 庶 政 刷 新 을 通 하 여 早 速 히 達 成 하 여 야 하 는 것 이 다 .

4. 公務員社會에서의 庶政刷新 對象

庶政刷新作業의 對象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公務員의 紀綱確立과 行政能率의 極大化를 沮害하는 一切의 業務上的 非違와 非能率的인 要素, 그리고 公務員으로서의 品位와 分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私生活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旧態依然한 勤務姿勢, 不正과 非違를 저질러 國民으로부터 指彈을 받게 되는 公務員, 非能率的이며 浪費的인 業務處理, 制度的인 不條理, 不正을 誘發하거나 國民總和를 沮害하는 公私生活等이 庶政刷新의 對象인 것이다.

이러한 庶政刷新의 對象을 行政의 構成要素別로 分類하여 본다면 사람(公務員), 일(業務), 制度, 環境(公私生活의 周邊環境)의 4가지 側面으로 区分할 수 있다.

가. 사람(不正·非違等 말썽 많은 사람)

庶政刷新이란 公共社會에서 執行하는 모든 業務를 올바르게 能率的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러한 業務나 行政은 公務員이 執行하는 것이므로 먼저 公務員社會의 體質改善부터 始作되어야 한다고 본다. 體質改善을 爲해서는 非違, 不正, 無能, 無事安逸한 公務員은 公務員社會에서 과감히 追放시키고 誠實하고 有能한 公務員은 保護하여 公務員社會를 淨化시켜야 한다.

따라서 公務員 各自가 國民을 爲해 奉仕하고 國家를 爲해 일한다는 公職者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갖고 스스로 體質을 改善해 나가야 한다.

나. 일 (浪費의이며 非能率的인 業務處理)

行政의 諸般 業務執行은 浪費의 除去와 能率의 極大化가 貫徹되어야 하며 또한 그 成果가 國民에게 되돌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爲하여는 公務를 處理할 때의 마음가짐과 姿勢를 親切, 公正, 迅速, 正確에 두어야 하고 모든 法令은 行政의 便宜를 爲해서가 아니라 國民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解釋해야 한다.

또한 公務員은 公共의 奉仕者로서 스스로의 精神姿勢를 確立한 後에 自己가 担当하고 있는 일(業務)에서부터 하나 하나 不條理를 除去해 나가야 한다. 業務가 쌓여 있는데도 꼼작않고 눈치나 살피면서 自己 몸생각만 하는 이른바 無事安逸主義者는 不正을 저지르는 사람만큼이나 國民과 公務員社會에 害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當然히 응징되어야 한다.

다. 制度 (行政體制上의 不條理)

庶政刷新을 效果的으로 推進해 나가기 爲해서는 不正, 腐敗, 非能率等 一切의 不條理 要因이 排除될 수 있도록 制度上의 補完과 改善措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誠實, 勤勉, 有能한 公務員이 保護받지 못하거나 浪費除去, 能率極大化, 國民爲主의 業務處理가 貫徹되는데 障礙가 되는 一切의 制度와 組織 및 行政構造는 庶政刷新의 對象으로 除去하거나 改善되어야 한다. 具體적으로 보면 豫算의 編成과 配分에 있어서는 正確한 根拠를 바탕으로 內容의 科學化와 經費의 現實化를 이룩하여 變態經理等 不條理의 介入을 防止하도록 하고 不要不急한 豫算의 計上을 止揚하여야 한다. 또 上級機關의 下級機關에 對한 指示, 統制, 支援, 調整, 機能을 再檢討하여 指示는 劃一性을 止揚하고 現地實情에 맞게 함으로써 알뜰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制度上의 基盤을 造成하여야 한다.

라. 環境 (公私生活의 周邊環境)

庶政刷新의 對象으로서 公務員의 周邊環境은 官署周邊을 淨化하는 일과 公務員의 私生活을 淨化하는 일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이러한 周邊環境은 公務員이 公務를 處理하는데 直接·間接적으로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첫째, 公務員의 職場周邊을 淨化하는 것은 公務員이 맡은 일을 청렴결백하고 迅速, 正確하게 處理할 수 있도록 外部干涉과 請託을 없애자는 데 있다. 「부로카」 등이 頻繁하게 官署를 出入하면서 利權에 介入하는 것, 出入業者 등의 誘惑이나 請託等 不正한 方法으로 利得을 取하려는 行爲發生의 與件, 또 所謂 地方有志 등이 公務에 介入하는 것 등을 防止함으로써 公務員 스스로가 自己의 清廉성과 公正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公務員은 家庭生活과 私生活에 있어서도 生活周邊을 淨化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社會指導者로서의 模範을 보이고 公職者로서의 分수와 品位를 지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公務員의 家族이나 親戚이 人事等 公務에 介入하거나 各種 特惠를 받는 등 請託行爲를 하는 것을 防止하고, 恒時 謙虛하고 儉素한 生活 態度로 奢侈와 浪費를 배격하고, 收入內 支出을 生活化하고 家庭儀禮準則을 준수하고 不健全한 弊習을 止揚함으로써 인근 住民에 垂範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社會不條理 除去

庶政刷新은 公務員社會의 不正이나 非違等を 없애는데 그 一次的인 目的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目的이 達成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一般社會의 不條理까지 말끔히 除去되어 社會全體가 淨化되어야만 그 本來의 目的이 達成되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社會의 모든 不條理現象도 公務員社會의 不條理를 除去하는 것과 同一한 精神과 次元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社會不條理 現象들을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反社會 및 反國家的인 維新沮害行爲, 庶民生活, 侵害行爲, 國民總和沮害行爲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反社會・反國家的인 維新沮害行爲

- ① 密輸・脱稅・密酒造

- ② 大麻草·麻葉等の 製造, 販売
- ③ 淫亂物製造·頒布, 頹廢行為
- ④ 새마을資材橫領等 새마을運動 沮害行為
- ⑤·財産逃避·偽裝移民

들째, 庶民生活 侵害行為

- ① 組織 및 常習的인 經濟暴力等 暴力行為
- ② 暴利行為, 有害食品·有害醫藥品 製造行為
- ③ 勞賃搾取, 國民經濟 侵害行為

세째, 國民總和 沮害行為

- ① 浪費와 奢侈等 分수에 맞지 않는 消費生活
- ② 도락·중상·무고等 非生産的인 生活態度
- ③ 賭博·放蕩行為·豪奢生活

以上과 같은 社會不條理를 우리 社會에서 깨끗이 몰아냄으로써 우리가 目的하는 바 國民生活이 安定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国力을 培養하고 國民總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6. 庶政刷新 推進의 精神姿勢

庶政刷新을 推進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精神姿勢의 確立이다. 庶政刷新을 우리 힘으로 期必코 성취시킬 수 있는 精神姿勢를 確立하기 爲하여는

첫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直面하고 있는 國家現實을 똑바로 認識하고 내가 앞장서서 庶政刷新을 이룩해야 한다는 使命感을 나의

信念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民族의 번영과 祖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여 榮光스러운 祖國을 後孫들에게 물려주기 爲하여는 우리 世代에 우리의 努力으로 庶政刷新을 定着시켜야 한다는 使命意識을 우리 모두의 信念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良心을 바로잡고 새로운 價值觀을 確立시켜 나가야 한다.

李朝時代부터 내려온 官僚萬能主義의 殘滓와 解放後 西歐文明의 無批判的인 導入의 過程에서 派生된 物質至上主義의 그릇된 觀念이 우리 모두의 良心을 적지않게 오염시켰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結果 一部에서는 國民 위에 군림하는 行政行態가 當然한 것으로 正當視되기도 했고 사소한 金錢의 뒷거래나 經理上의 不正은 조금도 良心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良心不在의 思考方式이 계속되는 限 庶政刷新은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良心을 바로잡고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行動을 所信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째로, 어떠한 誘惑에도 넘어가지 않는 勇氣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庶政刷新에 대한 使命感이 투철하고 올바른 良心을 가져 몇몇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外部로부터의 誘惑을 斷乎히 물리칠 수 있는 勇氣를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外部로부터의 誘惑을 물리칠 수 있는 勇氣를 가지지 못하면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誘惑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

다.

義를 보고 行하는데 勇氣가 必要한 것과 마찬가지로 不義를 보고 行하지 않는데도 그에 못지않은 勇氣가 必要한 것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庶政刷新에 대한 투철한 使命感, 떳떳하고 올바른 良心, 外部로부터의 거떠한 誘惑도 물리칠 수 있는 勇氣로써 우리의 精神姿勢를 確立하는 것이 庶政刷新推進의 절대적인 先行要件이 되는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이 庶政刷新을 精神革命이라고 強調하신 참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7. 庶政刷新의 推准責任

庶政刷新은 누구보다도 먼저 모든 公職者가 앞장서서 推准하고 實踐해 나가야 한다. 公職者中에서도 特히 機關長이 앞장서서 實踐하고 推准해야 한다.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機關長이 心機一轉하여 悲壯한 각오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그 밑에 있는 部下職員들이 이를 본받아 따르게 되고 그 機關안에 庶政刷新의 분위기가 造成되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機關長이 입으로만 庶政刷新을 외칠 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庶政刷新은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口號에 그치고 만다. 機關長들은 그 機關의 最高責任者이기 때문에 그 機關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不條理가 무엇이며, 不正의 要素가 있는 業務, 또 刷新되어

야 할 對象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機關長이 앞장서서 自己機關의 庶政刷新을 꼭 이룩하고 만다는 決意를 가지고 部下職員을 指導 監督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自体 監査를 強化하여 不條理를 과감하게 뿌리뽑을 뿐만 아니라 庶政刷新의 참뜻과 그 對象이 되는 不條理事例를 수시로 職員에게 教育하여 誠實한 公務員이 不意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指導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庶政刷新이 社会全般의 不條理를 剔抉하는 社会净化運動으로 승화되었을 경우, 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은 곧 各界各層의 指導級 人士들인 것이다. 이러한 指導者들이 앞장서 각기 그 分野의 刷新을 爲해 솔선수범하면 그의 指導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어 그 分野의 不條理는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며 庶政刷新은 社会净化運動으로 확산되어 不條理 없는 健全한 社会가 이룩될 것이다.

8. 結 論

앞에서 누누히 強調한 바와 같이 庶政刷新은 다만 官紀숙정이라는 低次元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起爆點으로 하여 社会全般의 不條理를 과감히 除去하는 社会革命으로 昇華되어야 하고 나아가 富強한 나라를 만들기 爲한 精神運動과 救国運動으로까지 發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現在 朴正熙大統領이 한결같은 救国理念下에 政治制度의 改革, 安保態勢의 確立, 經濟建設, 社会安定의 確保, 새마을運動, 庶政

刷新等* 民族의 類例 없는 大行進을 繼續하고 있으며 이러한 大行
進은 궁극적으로는 繁榮과 希望이 約束된 民族中興의 새 歷史를
創造할 것이다.

따라서 庶政刷新作業도 이러한 궁극적인 目標가 達成될 때까지
하나의 歷史的 課業으로서 꾸준히 繼續되고 強力히 推進되어야 하
는 것이다.

V. 牧民心書의 精神

1. 李朝의 実学思想과 清白吏 精神	93
가. 李朝後期社会와 实学思想	93
나. 清白吏 精神의 根本	95
다. 清白吏 錄要	96
2. 茶山의 牧民觀	97
가. 茶山の 生涯를 통한 그의 思想	97
나. 牧民心書의 内容(要約)	99
다. 牧民精神의 核心	109

- 牧為民有精神 -

V. 牧民心書의 精神

가. 李朝後期社会와 实学思想

李朝後期の 社会는 大体로 李朝開国の 基本理念中の 하나였던 儒学思想이 墮落하여 社会, 教育, 政治의 各分野에서 綱領的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兩班制度는 腐敗와 矛盾이 絶頂에 達하여 나라를 이끌기는 고사하고 各方面에서 그 弊害가 드러나던 그런 時代이다. 儒学이 指導理念으로서 国民에게 理想을 提示하지 못하니 百姓들은 꿈을 잃어 思想은 混亂하고 官紀가 紊亂하니 國勢이 서지 않으며 外侮가 잦아 北方民族과 外寇의 侵入이 자주 일어났다. 墮落한 中央官吏들이 벼슬을 팔고 사니 地方官屬들은 이를 본받아 토색질이 甚해지고 嚴한듯 하던 儒敎道德도 其實 빈 껍질뿐이었다. 따라서 社会正義가 간 곳 없으며 民亂이 자주 일어날 素地가 늘 마련되어 있는 狀態였다고 볼 수 있다. 社会가 이와 같이 混亂할 때에 國論을 定하며 나라를 支配하던 士類와 儒生들의 思想体系를 이끌어가던 學問風潮는 어떠한가?

李朝가 初期에 腐敗墮落한 仏敎를 몰아내고 새 國家를 建設해 나갈 嶄新한 指導理念으로 導入하였던 程朱學이 그 氣銳한 氣運을 잃고 空論으로 떨어지자 守旧派들은 如前히 性理學의 形式的 名分論에 빠져있는 反面, 一部에서는 淸의 北京을 通하여 스며들고 있던 西洋의 科學文明과 淸國의 考證學에 影響을 받아 새로이 實學思想이 抬頭되고 있었다.

遣清使로 北京을 드나들던 星湖 李翼, 磻溪 柳馨遠과 燕岩 朴趾源, 茶山 丁若鏞 등이 바로 이러한 實學思想을 代表하는 人物들이었다. 이들은 朱子學의 空論에 反撥하고 淸國의 考證學과 西洋의 科學的 思考方式에 눈을 돌려 事實에 立脚하여 새로운 批判精神으로 事物을 觀察하며 古典도 考證學的 方式으로 보자는 이른바 實事求是의 學風을 提唱하게 된 것이다.

牧民心書는 이러한 社會的 背景아래 茶山의 思想體系를 集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茶山의 學問的 立場은 勿論이고 짧은 歲月이 없지만 그의 꿈과 經綸이 펼쳐졌던 谷山府使時節의 牧民官으로서의 貴重한 經驗이 土壤이 되어 主로 地方守令으로서 어떻게 百姓을 기를 것인가(養民), 어떻게 百姓을 이끌 것인가(牧民),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治民)에 대해서 理想的인 職務綱領을 만든 것이 牧民心書이다.

實學派들의 主張을 그들의 著書를 통하여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 空理空論이요 頹廢的인 性理學에서 實際에 立脚한 實用 學風을 가지자. (磻溪隨錄 柳馨遠)
- 墮落한 官制를 實際로 改革하자. (經世遺表 丁若鏞)
- 現實의 여러問題를 解決함으로써 希望에 찬 理想社會를 建設하자. (星湖憲說 李翼)
- 吏道를 刷新하자. (牧民心書, 欽欽新書 丁若鏞)

나. 李朝 清白吏精神의 根本

清白吏思想은 그 行蹟만을 따진다면 꽤 멀리 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것을 制度化하여 治道의 根本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高麗後期에서 李朝中期까지라고 생각된다. 高麗朝에 있어서의 清白吏는 朝廷에서 清廉潔白하고 善政을 베풀어 民衆이 恭敬하고 떠받들게 된 官吏를 良吏라고 높이 부르게 하여 모든 사람이 推仰하고 받들게 하였다 한다.

이것을 좀 더 制度化하고 清白吏錄을 만들어 뽑힌 清白吏의 이름을 靑吏에 記錄하고 萬民이 떠받들도록 한 것은 李朝에 들어와서이다. 李朝太宗때부터 本格的으로 施行된 이 制度는 매우 嚴格하여 먼저 議政府와 六曹 및 京兆의 2品以上 堂上官과 司憲府 司諫院의 우두머리가 候補를 推薦하면 議政府에서 一旦 拳論하고 이 名單을 만들어 방을 불혀 公布함으로써 公議(輿論)에 묻고 一定한 期間동안 異論이 없으면 이를 다시 廟議에 부쳐 決定하며 清白吏錄에 올린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當事者가 在世中이라면 清白吏라 부르지 않고 廉謹吏라 부르다가 死後라야 비로소 清白吏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와같이 嚴格하기 때문에 太祖때부터 純祖時까지 清白吏錄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겨우 190名(或 110名 說도 있음)뿐이었다는 이야기다.

李朝清白吏精神의 根本은 옳은 治道의 確立에 있었으며 이 治道를 바르게 實踐한 이가 이들이라고 보고 이들의 行蹟을 온 나라의 百姓들에게 알리고 吏屬과 士領들의 師表가 되게

함과 동시에 옳은 吏道를 後世에 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李朝清白吏 錄要

○ 厖村 黃喜

高麗 恭愍王~李朝文宗 (1363 ~ 1452)

○ 暗行御使, 六曹判書, 領議政

○ 古仙 孟思誠

高麗 恭愍王~李朝世宗 (1359 ~ 1438)

大司憲, 右議政, 左議政

李朝世祖~成宗 (1416 ~ 1493)

吏曹參判, 知中樞府事, 濟州牧

○ 退溪 李 滉

燕山~宣祖 (1501 ~ 1570)

性理學者, 副提學, 參判

○ 農齊 李 翼

仁祖~ (1689 ~ 1715)

司諫院正言, 慶尚觀察使, 刑·吏曹判書

2. 茶山의 牧民觀

가. 茶山의 生涯와 그의 思想

英祖 38年 晉州牧使인 丁載遠公의 4男으로 出生하였으며 27歲時(正祖 13年) 文科에 及弟하였다. 文科에 登科前 23歲時에 初試와 會試에 各各 合格하여 그해에 正祖에게 中庸을 講하여 正祖로부터 稱讚을 받은바 있으며 이로 因해 一生동안 正祖의 卹호를 받는 契機가 되었다. 副司正, 芸文館 檢閱을 거쳐 副承旨까지 올랐다. 그는 16歲時에 벌써 星湖의 遺稿를 읽고 實學에 눈을 뜨게 되며 自己의 方向을 이때부터 뚜렷하게 잡았다 한다. 司諫院 正言을 거쳐 弘文館修撰으로 있을 때에는 水原城을 쌓는데 起重架設에 依한 滑車軋軸를 만들어 科學的인 技術을 利用하는 첫 試罔을 하였다. 뒤에 天主教에 가까이 한 罪로 金井察訪으로 左遷되고 다시 召還되어 右副承旨, 兵曹參知 同副承旨, 刑曹參議等을 歷任하였다. 純祖 1年(1801) 辛酉邪獄에 連座되어 두 兄과 같이 流配를 당하게 되었으며 茶山은 康津으로 定配되었다.

茶山은 謫所에서 18年間(1801~1818)을 보냈으며 이 동안에 大部分의 著述을 完成하였다. 純祖 18年에 刑이 풀려 承旨로 부름을 받았으나 己亥邪獄時 天主教를 떠난 것을 뉘우치고 벼슬을 버리고 鄉里 広州楊根으로 내려가 著書와 信仰에만 沒頭하다가 憲宗 2年(1836)에 죽었다. (65歲)

그의 業績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治績과 著書이다.

治績에 있어서는

- ① 水原築城時의 奇器圖說에 의한 起重機의 創案
- ② 33歲時 京畿暗行御使로서 漣川과 積城地方의 官屬들의 腐敗를 是正하고 京畿觀察使(徐容輔)를 告發하여 罷職시키고 京畿御使復命後論事疏를 올렸다.
- ③ 谷山府使로 있을 때는 西洋의 天文, 曆象, 農政, 水利, 測量等과 같은 科學知識을 行政에 適用하여 庶政을 革新하는데 努力하였다. 谷山府使時 그는 牧民官으로서의 꿈을 한껏 꾀보았으며 여기서 實踐하였던 일들은 뒤에 바로 牧民心書의 骨子を 이루게 되는 것이다.

谷山府使時 治績의 概要는

- 軍布上納時의 협잡의 根本이 되는 자(尺)를 바로 잡고 上納時期를 調節하여 軍布값의 昂등을 막았다.
- 農家所得增大를 爲하여 每戶當 송아지 한마리씩을 사주었다.
- 倉穀의 利用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一時에 輸送分配토록 하였다.
- 戶籍, 境界, 簽丁等의 事務를 改革하여 戶布의 남용을 是正하였다.
- 天然豆防止를 위해 麻科會通을 編纂하였다.
- 正祖의 密旨를 받아 淸使의 來往時 道內守令들의 協잡을

밝혀냈다.

- 道内の 疑獄事件을 公平하게 処理하여 正祖의 稱讚을 받았다.

그의 著書目録

周易四箋	全 24 卷	詩經講義	全 12 卷
春秋考徵	全 10 卷	論語古今註	全 40 卷
中庸自箴	全 1 卷	大學公義	全 1 卷
孟子要義	全 9 卷	心經密驗	全 2 卷
經世遺表	全 40 卷	牧民心書	全 48 卷
欽欽新書	全 30 卷	易學緒言	全 12 卷
尚書古訓	全 21 卷	梅氏書平	全 10 卷

나. 牧民心書 (要約)

(1) 自序속의 그의 精神

「前略……聖賢의 가르침에는 元來 두길이가 있다. 하나는 司徒가 萬民을 가르침으로써 各己 修身토록 함이요, 다른 하나는 大學에서 國子를 가르침으로써 各己 修身하고 治民하도록 함이니 곧 牧民이다.

그러나 지금 司牧하는 사람들은 바야흐로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飲食으로 혼자 살찌가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中略) 이에 二三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歷史 및 子集諸書를 갖고 옛날 司徒들의 牧民한 발자취를 찾아 意味를 새로이 하여 그 本을 삼으려 함이니. (中略) # 전사람의 말이나 지나간

行動을 많이 知識으로 삼아 自己의 德을 쌓는다 〃 고 하였으니 이 冊은 本來 德을 쌓기 위한 것이니 하필 꼭 牧民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心書란 이러한 뜻에서 發願한 것이다. (後略)」

(2) 牧民心書와 그의 牧民觀

牧民心書는 全文 66 個條로 되어 있다. 그는 이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牧民官으로서의 몸가짐과 執務姿勢를 仔詳하게 그리고 있다. 本文의 要旨를 통하여 그의 뜻과 精神을 살펴보자.

① 赴任六條

- 1條 除拜 : 다른 벼슬은 自請해도 좋지만 牧民官은 그 래서는 안된다.
赴任節次에 따른 弊害가 없도록 할 것이며 될 수 있는限 省略하도록 하라.
- 2條 治裝 : 갖추 行裝中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만들 지 말며 隨行하는 사람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
- 3條 辭朝 : 監督官厅의 上官에게 赴任人事를 드리되 스스로 제그릇이 아님을 알할 뿐 單말은 말며 人事担当官에게 일부러 謝意를 表하거나 付託의 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條 啓行 : 赴任途中에도 莊重하고 和平하고 簡潔하고 寡黙하여 마치 말조차 못하는 사람같이 하라.
- 5條 上官 : 任地着日을 扨日하지 말며 到着日로 屬官들의 申告를 받고 施策運營의 方針을 조용히 생각하라.
- 6條 莅事 : 臈明부터 일찍 자리에 設아 事務를 處理하라. 제일 먼저 儒生과 百姓들의 苦衷을 듣도록 하라.
施策約束을 發表하고 主要民事의 處理期間을 알려주라.

② 律己 六條

- 1條 飭躬 : 節度있게 行動하고 衣服은 端正하게 態度는 莊重하게 對民하라. 至誠을 다 보이라.
- 2條 清心 : 清廉이란 牧者의 本質이요, 만가지 善行의 源泉이요, 德行의 根本이니 이렇지 않고는 牧者가 될 수 없다.
- 3條 齊家 : 自身을 가다듬고 집안을 가다듬은 뒤라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牧官은 먼저 家집을 嚴히 團束하여 家族이 官衙에 連関이 없도록 하라.

- 4條 屏客 : 大体로 官厅에 손님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書記 한사람으로 안팎을 担当케 하여 疑心이 없도록 하라.
- 5條 節用 : 牧民官은 慈愛롭고 清廉함을 為主로 하는데 制限과 節用이 없고는 이것은 不可能하다.
- 6條 樂施 : 節約만 為主고 為用을 모르면 親戚도 背反할 것인즉 節用으로 쌓인 財貨는 德과 善을 行하는데 아낄줄을 모르고 즐거이 行해야 한다.

③ 奉公 六條

- 1條 宣化 : 郡守, 縣令도 國家의 宣化機關이기 觀察使에게만 미룬은 마땅치 않다. 國家施策이 守令方伯없이 어찌 施行되겠는가? 國家의 榮辱과 守令의 榮辱은 같은 것이다.
- 2條 守法 : 法은 國命이다. 法을 지킴에 있어 公私를 뚜렷이 하고 法의 勳은 施行與否가 自身있게 있음을 銘心하라.
- 3條 禮際 : 禮儀를 갖추어 對할때 君子는 이를 慎重히 다루어야 한다. 恭遜함도 禮儀에 알맞추면 恥辱을 免한다.

- 4條 文報：公文書의 文案은 精神을 가다듬고 손수 손질하며 部下職員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 上下公文 모두 같다.
- 5條 貢納：稅納職員의 弄奸을 막으라. 百姓들은 財物의 源泉이요. 여기서 貢納을 받아 나라를 꾸려간다.
- 6條 往役：上司의 差遣은 承順하고 評계를 내지말라. 그러나 高官의 請託은 絶對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④ 愛民 六條

- 1條 養老：老人을 恭敬하고 이로서 孝道의 根本을 삼도록 하라. 敬老行事를 자주 열도록 하라.
- 2條 慈幼：어린이를 돌보아 國家將來를 튼튼케 하라. 내 子息같이 돌보라.
- 3條 振窮：窮, 寡, 孤, 獨을 돌보라.
- 4條 哀喪：喪際의 勞役은 免除하고 喪事마다 厚한 吊意를 表하라.
- 5條 寬疾：病者를 돌보고 勞役을 免除하여 주라.
- 6條 救災：災害對策을 迅速히 하고 百姓의 災殃을 豫防하는데 힘쓰라.

⑤ 吏典 六條

- 1條 束吏：屬吏의 團束은 牧官의 本務요 屬吏들의 秩序와 紀綱은 全的으로 牧者의 命令举措에 달려 있다. 屬官을 團束하되 寬, 嚴, 刑, 賞을 兼해야 한다.
- 2條 馭衆：大衆 馭制하는데는 威嚴과 信義가 있을 따름이다.
- 3條 用人：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의 與否는 用人에 달려 있다.
忠信을 으뜸으로 才操는 그 다음으로 삼아야 한다.
- 4條 擧賢：賢人을 천거하는 일도 牧官의 職分中의 하나이다.
- 5條 察物：四方으로 눈을 밝히고 귀를 기울이라. 物情을 밝게 알아야 다스리는 일도 밝을 것이다.
- 6條 考功：官屬의 일은 반드시 功績을 따져라. 功績이 밝혀지지 않으면 屬吏들은 속임수를 쓰고 百姓들은 힘써 일하지 않을 것이다. 功過를 따져 年末에 가서 賞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戶典 六條

- 1條 田政 : 牧者의 職責中 土地政策이 가장 어렵다.
土地調査, 土地測量, 耕作勸告, 税金賦課等
어떻게 事實하며 公平하게 할 것인가 하
는 것은 百姓들과의 信賴가 直結되어 있
는 것이다.
- 2條 稅法 : 農地制度가 紊亂하여지면 稅法도 自然 紊
亂하여진다. 稅法의 事實公正 如何는 百
姓의 信認과 國庫의 豊乏을 가름하게 된
다.
- 3條 穀簿 : 糧穀受納과 社倉과 還穀制度의 紊亂한 運
用은 怨聲의 根源이 되고 있다. 社倉은
百姓의 어려움을 돕는데 根本이 있다.
- 4條 戶籍 : 이는 賦課와 勞役의 根本이다.
- 5條 平賦 : 賦役은 고르게 해야 한다.
- 6條 勸農 : 農業은 農民의 利益이요 國財의 源泉이다.
우리는 農本之國이니 農事와 牧畜에 힘쓰
도록 해야 한다.

⑦ 禮典 六條

- 1條 祭祀 : 守令이 지내야 할 祭祀에 三壇一廟가 있
다. 마땅히 경건히 지내야 한다.
- 2條 賓客 : 손님接待는 五禮의 하나다. 節度에 맞는
制度로 適切히 運用하라.

- 3條 教民：民衆教化도 牧民官의 職分의 하나이다.
모든 施策을 고르게 함으로써 施策을 통한 教化가 으뜸이고 가르침을 통한 教化가 그 다음이다.
- 4條 興學：學校를 振興시키고 圖書館을 開設하며 스승을 待接하여 民衆의 師表를 삼게 하는 일은 牧民官이 하여야 할 가장 次元높고 重要的인 일 中の 하나이다.
- 5條 辨等：貴賤이 있으므로 等級을 가르는 것이 좋으며 이는 百姓의 精神을 安定시키는데 意義가 있다.
- 6條 課芸：科擧의 學은 人間本然의 마음을 破壞한다. 그러나 科擧制度가 있는 이상 이에 익숙토록 이끄는 것도 牧者의 한 職責이다.

⑧ 兵典 六條

- 1條 簽丁：兵役事務를 公平히 함은 國防의 根本이다. 兵役義務를 金品으로 代身할 수 있는 法은 中宗朝에서 비롯했으나 民生의 弊에 사무치는 病弊를 가져오고 있다. 이 法을 고치지 않으면 百姓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 2條 練兵：軍事訓練의 重要함은 百番을 되풀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 3條 修兵：軍隊와 裝備는 百年에 한번도 使用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몇百年에 한번을 위하여 嚴重히 수리하여야 한다.
- 4條 勸武：우리네 風俗은 文弱한 弊端이 있다. 활쏘기 뿐인 柔弱性을 脱皮하도록 武術을 勸獎하여야 할 것이다.
- 5條 應變：危機에 臨하여 應變하는 方案을 對備하여 亂을 막아야 한다.
- 6條 禦寇：外敵이 侵入하면 이를 막는 責任은 兵馬官과 같다.

⑨ 刑典 六條

- 1條 聽訟：訴訟聽取의 根本은 誠意에 있고 誠意의 根本은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하는데 있다.
- 2條 斷獄：判決의 要諦는 明哲하게 하고 慎重을 期하는데 있을 따름이다.
- 3條 慎刑：牧民官이 執行하는 刑量에는 等級이 있다. 百姓을 학대한 者는 上刑, 公事處理 잘못은 中刑이요, 其他는 下刑이다.

- 4條 恤囚 : 감옥은 이 世上의 地獄이니 罪囚의 苦痛을 人情있는 者는 돌봐주어야 한다.
- 5條 禁暴 : 暴力을 禁하고 亂動을 막아냄으로써 百姓을 便安케 하기 위해 勢力을 믿는 者와 權利를 자랑하는 者를 두려워 말고 百姓便에 굳게 서야 한다.
- 6條 除害 : 도둑, 귀신, 虎患으로부터 百姓을 保護하는데 全力을 다 해야 한다.

⑩ 工典 六條

- 1條 山林 : 治山養松을 잘해야 한다.
- 2條 川沢 : 治水를 잘해야 한다.
- 3條 繕廩 : 官營造物의 修理를 잘해야 한다.
- 4條 修城 : 城을 잘 修築해서 國防을 튼튼히 해야 한다.
- 5條 道路 : 治道를 잘해야 한다.
- 6條 匠作 : 工作機具를 變질나게 바꾸지 말라.

⑪ 賑荒 六條

- 1條 備資 : 凶年 對策을 세우라.
- 2條 勸分 : 災害義損을 勸奨하라.
- 3條 規模 : 救護對策을 規模있게 하라.
- 4條 設施 : 미역, 마른새우, 간장, 糧穀等を 갖추어야 한다.

- 5條 補力：代播準備를 하라.
- 6條 竣事：災害事後를 点檢하고 잘못을 가리라.

⑫ 解官 六條

- 1條 通代：벼슬은 바뀌는 것이니 놀랄것 없다.
- 2條 歸裝：退任行裝은 깨끗해야 한다.
- 3條 願留：眞情의 만류를 받으면 一代의 榮光이다.
- 4條 包宥：法에 걸린 者를 百姓들이 呼訴하면 받아 들여
- 5條 隱卒：殉職한 後 禿火가 끊이지 않게 하라.
- 6條 遺愛：죽은 뒤에 祠堂을 세워 그를 追慕하면 그의 續은 짐작할만 하다.

다. 牧民精神의 核心

牧爲民有乎，民有牧生乎

百姓이 있기 때문에 牧民官이 있고 百姓이 있기 때문에 牧民官이 살 수 있다는 孟子님의 말씀이다. 또 孟子님은 民爲貴君爲輕이라고 하여 임금조차도 百姓보다는 가볍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牧民官은 이 精神을 바로 認識하고 養民할 줄 알 때 비로소 牧民官이라고 할 것이다.

VI. 統計와 그 重要性

1. 統計의 概念	113
2. 統計調査와 그 目的	114
3. 統計調査의 分類	115
4. 統計法에 依한 統計의 分類	120
5. 統計法 解説	121
6. 統計와 行政	128

1. 統計의 概念

統計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누구나 다 우선 우리나라의 總人口數, 通貨量, 物價指數, 出生率, 輸出額, 就業者數, 俸給者의 平均所得額 等等의 어떤 숫자를 연상하게 되는 것처럼 統計는 어떤 숫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떤 사람의 키, 나이, 所得額이나 어떤 商店의 하루 販賣額, 또는 어떤 工場의 從業員數 등과 같은 어떤 集團이나 社會를 構成하는 各 單位 即 個體에 關한 숫자가 아니라 이 個體에 關한 숫자가 모인 結果의 어떤 숫자로서는 어떤 集團이나 社會全體에 關한 現實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統計는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첫째 「統計는 어떤 對象을 갖는 숫자」이다. 그런데 이 對象은 時間과 地域의 制約을 받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統計는 具體的인 숫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對象은 一般的으로 複數로 取扱되는데 對象의 複數는 곧 集團이 되므로 「統計는 어떤 集團에 關한 숫자」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統計는 作成되는 숫자」이다. 統計가 어떤 集團에 關한 숫자인 以上 各 個體에 關한 숫자를 모아서 만들어지므로 그냥 단순히 주어진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努力에 의해서 얻어지는 숫자 即 作成되는 숫자이다.

셋째 「統計는 利用되는 숫자」이다. 統計는 결코 作成하는데 目的이 있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目的에 利用키 위한 숫자이다.

그리고 統計가 利用되는 根拠는 그것이 어떤 集團의 現實을 反映하는 숫자라는데 있다.

이와 같이 統計가 숫자이기는 하나 숫자 自体를 말할 때 일반적인 숫자와는 다르므로 이를 區別하기 爲하여 統計숫자라는 用語를 使用하기도 한다.

2. 統計調査와 그 目的

統計調査는 어떤 目的에 必要한 統計를 提供하기 爲하여 가장 適切한 方法과 節次를 定하고 이 節次와 方法에 따라 統計를 爲한 資料를 蒐集, 整理하여 그 結果를 統計票로서 作成하는 등의 諸般業務를 統計調査라 한다. 따라서 統計調査員의 業務는 定해진 節次와 方法에 따라 資料를 蒐集하는 것이며 이 資料의 蒐集이 잘 되느냐에 따라 正確한 統計가 되기도 하고 不正確한 統計가 되기도 하므로 調査員의 業務는 統計調査業務中에서 가장 重要な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에서 各種 統計調査를 實施하고 있는 理由는

첫째 社會 및 經濟開發計劃 樹立의 基本이 되는 統計情報(資料)를 提供하고

둘째 政府의 一般政策 및 特殊政策의 實施結果도 成就된 改善 및 發展의 程度를 評價하기 爲한 資料를 提供하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業務가 소홀하게 되면 各種政策 樹立의 基礎가 되는 統計숫자가 正確치 못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正確치 못한 統計숫자로 各種政策을 樹立한다면 政府에서 주력하고 있는 各種 開發計劃에 많은 蹉跌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國家的으로 큰 損害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業務가 國家全体에 미치는 影響은 상당히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業務가 重要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業務에 임해야 한다.

3. 統計調査의 分類

가. 全數調査와 標本調査

(1) 全數調査

우리나라 現時點의 人口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女子는 얼마나 될 것인가? 또 今年의 米곡 수확량은 얼마인가? 이를 알기 爲해서는 各 家口의 家口員數나 各 農家의 米곡 수확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全部 調査해 보지 않으면 正確히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調査하고자 하는 對象을 하나도 빠짐없이 全部 調査하는 것을 全數調査라 한다. 即 1970年 人口 센서스 結果의 人口數, 農業 센서스 結果의 農家數, 鉍工業 및 製造業 센서스 結果의 事業體數等은 全數調査에 의한 結果들이다.

(2) 標本調査

全數調査가 対象全部를 調査하는 것인데 反하여 標本調査는 対象의 一部分만을 調査하고 이것을 基礎로 하여 全体를 推定하는 調査方法이다. 우리나라 미곡 수확량의 경우 各地域別로 一定한 方法에 依하여 設定된 一部分의 面積에 對해서만 미곡 수확량을 調査하고 이 調査結果로 坪當 수확량을 計算하여 여기에 總 耕作面積을 곱하여 우리나라 全体의 미곡 수확량을 推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담당한 7 個의 標本調査도 対象 全部를 調査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一部分에 該當하는 標本에 對해서만 資料를 蒐集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뚜렷한 사실이다.

標本調査를 하는 理由를 要約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費用의 節約 - 經濟性

나) 集計의 迅速 (時間의 節約) - 迅速性

다) 精度의 向上 - 正確性

처음의 두 理由에 對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全數調査와는 달라서 標本調査는 調査對象의 數가 적기 때문에 費用이 적게 들 것은 당연하다. 또 調査對象의 數가 몇分の 一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集計所要時間도 줄게 되어 結果를 빨리 利用할 수 있다. 統計調査의 結果가 迅速하게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은 大端히 重要한 일로써 아무리 內容이 풍부하고 正確한 統計라 할지라도 3年이나 5年

이 지난 後에야 結果가 發表된다면 별로 쓸모가 없게 된다. 物價나 賃金 統計 따위는 그때 그때의 最新資料를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 標本調査에 依할 수 밖에 없다.

세번째의 理由인 精度의 向上에 對해서는 좀더 說明이 必要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標本調査는 一部分만을 調査하여 全体를 推定하는 方法이기 때문에 全數를 調査하는 全數調査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卽 조잡하게 實施된 全數調査보다는 精밀하게 企劃되고 運用된 標本調査의 結果가 보다 信賴性이 높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統計調査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正確한 資料를 얻기가 困難하고 또 調査關係자가 特히 被調査者와 直接 對하는 調査員이 언제나 正確한 調査活動을 하리라고는 保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 센서스와 같이 數萬名의 調査担当者가 動員되는 大規模 調査가 될 것 같으면 이들에 對한 調査方法의 傳達指導가 劃一的으로 正確하게 行하여지기 어렵다.

상당히 詳細한 調査指示書를 準備하고 細心한 注意를 한다 하더라도 傳達의 段階가 中央에서 市·道로 市·道에서 다시 邑·面으로 段階가 接할수록 末端에서 指示는 잘못 傳達될 수가 많다.

따라서 調査員의 調査活動도 劃一的으로 行하여지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많은 過誤를 저지르게 된다. 이와 같이 統

計調査에서는 調査上の 誤差가 發生하는 것인데 그 크기는 調査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增大하는 것으로 人口센서스와 같은 大規模의 調査에 이르면 一般人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標本調査에서는 이 調査上の 誤差의 애로를 크게 해소하게 된다.

첫째로 調査規模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調査管理를 철저히 할 수 있다.

둘째로 소수의 調査員으로, 調査할 수 있으므로 有能한 調査員을 채용하여 充分한 訓練을 實施함으로써 調査上の 過誤를 免하게 한다.

세째로 調査를 정밀하게 行할 수 있다.

調査上の 誤差의 견지로 보아 標本調査가 全數調査보다 좋은 調査結果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는데 다음에 標本誤差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調査結果의 精度와 關聯하여 標本調査의 優秀성은 한층 명료하게 된다. 즉 標本調査는 部分的으로 標本만을 調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不正確性을 가지는데 이를 標本誤差 (Sampling Error)라 하고 앞에서 본 調査上の 誤差 即 非標本 誤差와 區別하고 있다. 그런데 確率標本에 依한 標本調査는 確率論의 知識을 利用하여 그 結果가 가지는 標本誤差의 크기를 推定할 수 있고 또 이를 미리 고려에 넣어 必要한 精度의 結果를 얻을 수 있도록 標本을 設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調査結果의 精度를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고 또 反對로 必要한 精度의 結果를 얻으려면 어떠한 標本을 使用하면 좋은가 하는 점에 對하여 따질 수 있는 것이 標本調査의 가장 뚜렷한 特徵이고 長點이다.

그렇다고 해서 恒常 標本調査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即 반드시 全數調査를 하여야만 할 경우, 작은 地域에서 標本을 많이 抽出하여야 할 경우, 標本調査를 함으로써 費用이 더 들게 될 경우, 그리고 두 時點間의 작은 變動을 把握하여야 할 경우에는 全數調査를 하게 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나. 靜態調査와 動態調査

(1) 靜態調査

一定한 날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調査하고자 하는 事項을 即, 特定時點 現在의 停止된 狀態에서 調査하는 統計 調査를 말하며 여기에는 人口 및 住宅센서스, 鉦工業센서스, 農業센서스, 都小売業 센서스等 普通 大規模의 全數調査가 包含되며 이 資料는 主로 長期政策資料로 많이 利用된다.

(2) 動態調査

調査하고자 하는 事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即,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推移를 把握하는 統計調査로서 여기에는 우리가 現在 調査하고 있는 人口 動態調査, 經濟活動人口調査, 鉦工業動態調査, 都小売業動態調査等

보통 分期 및 月刊調査가 包含되며 주로 短期政策資料로 많이 利用된다.

4. 統計法에 依한 統計의 分類

가. 指定統計

指定統計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指定機關”)이 作成하는 統計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調査統計와 報告統計를 말한다.
(統計法 第2條 第2号)

統計作成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統計調査員 包含)는 指定統計의 調査나 確認을 爲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事項에 關하여 檢査 또는 調査資料 提出의 要求를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다. (統計法 第7條 第1項)

이 경우에 統計調査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표를 關係人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指定統計作成이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事項일 뿐만 아니라 調査結果의 公表에 있어서도 承認을 얻어야 한다.

또한 指定統計調査는 政策上 그 正確性이 特히 要求되는 것으로 調査上의 權限을 부여함과 동시에 허위자료의 신고, 申告妨害, 檢査拒否, 또는 기피와 統計調査의 結果를 眞實과 相反된 것으로 만드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한 罰則規定을 두고 있다.

(統計法 第 17 條)

나. 一般統計

一般統計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이 作成하는 統計中 指定統計 以外の 統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統計를 말한다. 一般統計를 作成하고자 하는 機關의 長은 그 統計作成에 關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結果 公表에 있어서도 指定統計와 마찬가지로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5. 統計法 解説

가. 概要

統計法은 1962年 1月 15日 法律 第 980号로 公布된 法律로서 同年 12月 12日과 1975年 12月 31日에 改正法律 第 2799号로 改正 公布 施行되고 있다. 이 法律은 統計調査에 關한 唯一한 基本的인 것이다. 따라서 이 法律은 經濟企劃院長官으로 하여금 統計制度의 效率性 및 統計의 眞實性을 確保하게 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또한 統計調査에 關한 行爲를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나. 統計法의 目的

第 1條 (目的) 이 法은 統計에 關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査

하고 統計의 體系를 整備함으로써 統計의 眞實性和 統計制度의 效率性의 確立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는 이 法律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達成하려는 目的을 表示한 것이다. 即 統計法의 目的의 第1은 무엇보다도 統計調査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統計의 體系를 整備하는 것이며 目的의 第2는 第1의 目的을 達成함으로써 窮極的으로는 統計의 眞實성을 確保하고 統計制度의 改善發展을 效率的으로 確立함을 圖謀하는데 있다.

따라서 第1條에서 規定된 目的은 이 法律의 內容인 各條의 規定을 一貫하는 精神을 表示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은 또한 各條의 規定의 內容을 넘어서 더욱 永続하는 統計或은 統計制度 그 自体의 理想을 表現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法律의 目的은 우리 國民 全体가 統計를 改善시키고 發展시키려는 決心을 宣誓하는 公約이며 統計의 眞實성을 確保, 即 統計의 正確性 信賴性, 및 迅速성을 確立시키고 發展시키는데에 必要한 原理原則을 表明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第1條의 消極的 目的은 統計調査의 重複을 除去하는데 있고 積極的으로는 統計의 改善發展에 있는 것이다.

(1) 統計調査의 綜合的 調整과 統計體系의 整備

統計法의 目的의 第1은 統計調査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여 統計의 體系를 整備하는 것이다. 統計調査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한다는 것은 統計調査의 重複을

除去하는 것으로 이것은 統計의 眞實性 卽 正確性, 信賴性, 迅速性の 確保를 위하여서는 消極的인 面이나 統計調査의 綜合調整을 包含한 積極的인 面에서 보면 이 法의 目的의 第 1은 結局 統計体系의 整備가 되는 것이다. 統計의 眞實性 卽 統計의 正確性・信賴性 및 迅速性を 確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2節의 統計의 眞實性の 確保와 統計制度의 確立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統計調査에 對하여 被調査者로 하여금 眞實한 申告를 하도록 그 申告의 義務를 賦課하게 하는데 (第 4條) 이것에 違反한 行爲에 對하여서는 罰則(第 17條)에 依하여 処罰할 必要가 있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強制의 拘束力을 發揮하는 뒷받침은 첫째로 統計實施機關들이 煩雜한 統計調査를 重複하여 實施하는 것을 삼가 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統計調査機構를 必要以上으로 많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調査를 重複해서 實施한다면 被調査者인 國民의 負擔이 무겁게 되며 나가서는 申告를 싫어하며 忌避하려는 생각을 들게 하고 或은 그럴듯한 責任없는 申告를 하게 되어 結局은 統計의 眞實性を 確保하지 못하게 한다. 또 統計調査의 機構를 必要以上으로 많게 하여 調査의 重複이 行하여지면 이것은 必然的으로 調査費用의 二重消費가 되어 結局은 國民의 納稅의 負擔을 크게 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 統計調査의 重複은 除去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調査重複을 除去하기 爲하여 統計調査에 關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統計機關의 事務의 能率을 올리고 國民의 負擔을 輕減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調査의 綜合的 調整은 統計의 利用者에게 利益을 주게 된다. 從前에 우리나라에서는 所謂 勞動力調査라는 것을 서로 다른 調査機關에서 實施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所謂 完全失業者라는 統計數字가 顯著的 差異를 가지고 各各 公表되기 때문에 이것을 利用해야 할 統計利用者は 어느쪽의 統計가 正確하고 信賴性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統計의 眞實性에 對한 疑心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같은 完全失業者라는 概念을 各 統計機關의 主觀的인 定義에 依하여 調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統計調査의 綜合的 調整은 統計調査의 基準設定을 必要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統計調査의 綜合的 調整에서 積極的으로 統計體系의 整備를 向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떠한 組織이 어떠한 運營을 行해야 하는 問題가 效率的으로 解決되어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統計調査의 綜合的 調整과 統計體系의 整備라는 統計法의 第1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統計法 規定이 있다. 第3條 統計作成의 承認, 第11條 統計資料의 分類等이다.

(2) 統計의 眞實性的 確保와 統計制度의 效率性的 確立

統計法의 目的의 第1인 統計調査의 綜合的인 調整과 統計體系의 整備가 行하여짐으로써 結局은 統計法의 目的의 第2가 達成될 것인바 이 第2의 目的이 統計의 眞實性的 確保와 統計制度의 效率性的 確立이다.

먼저 統計의 眞實성에 對하여 보면 統計는 眞實性 그것을 生命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眞實하지 않은 統計는 無益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有害한 것이 되는 것이다. 眞實한 統計는 正確性和 信賴性을 말하는 것으로 不正한 統計秘密統計에 對하는 말이다. 不正한 統計라는 것은 統計의 作成者가 各種의 思感에서 統計의 數字를 人위적으로 展開하거나 实地調査를 行하지 않고 主觀的으로 適當한 數字를 記入 記錄한 統計의 數字를 말하며 秘密統計라는 것은 어느 한 機關만이 基礎資料로서 利用하고 널리 國民에게 公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不正한 統計 秘密統計는 그 正確성에 違背된다. 그리고 統計調査의 目的과 方法에 따라 或은 統計調査의 事項 範圍 및 期日에 따라서 그 信賴性을 判斷하게 되므로 推定된 誤差의 程度가 最小限度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統計制度의 效率性的 確立에 對하여 보면 위에서 말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統計制度上에 여러 가지 改善을 行하고 그 發展策의 確立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統計를 生産하는 機構와 그 運用이 效率的이어야 한다. 統

計制度의 效率性의 確立은 統計 그 自体의 發展에 있으므로 統計의 眞實性과 統計體系의 整備가 目的으로 된다. 統計法의 統計制度의 效率性에 關聯된 條文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있다.

첫째 이 統計法을 統計에 關한 基本法으로 하고

둘째 이 法律의 企圖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中心機關이 되며 그 權限을 規定하였고

셋째 그 以外에도 統計에 關한 여러가지 重要한 事項에 對한 決定 權限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附與하며

넷째 公表의 原則을 確立한 것이다.

法 第10條의 統計結果의 公表規程은 모든 統計調查結果는 반드시 公表하도록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有效하게 統計結果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될 수 있는한 迅速히 公表하여야 하는 것을 宣言한 規定이다.

即 莫大한 豫算과 人力을 投入하여 實施한 統計調查結果는 모든 사람이 迅速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統計法上 統計의 種類

第2條에서 定義한 統計는 一般統計와 指定統計로 区分되는바 指定統計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指定機關)이 作成하는 統計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統計를 말하며 一般統計는 指定統計以

외의 統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統計를 말한다. 여기서 指定 統計와 一般統計의 區別을 法條文上으로 보면 指定統計는 第4條의 申告義務를 부과할 수 있으며 第9條의 統計目的以外的 使用禁止規定 및 第14條의 指定統計의 作成機關의 長은 指定 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機關이 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 대하여 必要한 協力を 要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現行 指定統計는 人口센서스를 비롯하여 33個의 統計調査가 있으며 一般統計는 約 500餘種이 있다.

라. 統計法 違反事項에 對한 措置

第17條(罰則) 規定에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令을 받고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妨害한 者,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偽의 調査資料를 提供하거나 虛偽의 陳述을 한 者, 統計作成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其他의 者로서 統計作成의 結果를 故意로 眞實과 相異한 것으로 만드는 行爲를 한 者는 6月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第18條(罰則)에서는 統計作成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하였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의 秘密에 屬하는 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違反事例가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各 地方檢察廳長 또는 警察署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6. 統計와 行政

人間의 모든 行爲에는 目的이 있으며 이 目的을 達成하는 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方法이 最善의 것인지를 決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方法과 手段 그리고 나아가 目的 그 自体를 決定하는 데는 自己의 直感이나 主觀的 判斷에 依하는 수가 있으나 이러한 方法은 大体로 偏見이 되기 쉽고 극히 漠然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判斷이란 무엇인가 客觀的이고도 實証的인 土臺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統計란 實際로 過去에 依存했거나 혹은 現在 存在하고 있는 社會現狀을 觀察한 結果를 客觀的이고 具體的인 數字로 表現한 것이기 때문에 個人的이고 主觀的이고 抽象的인 것은 排除하고 있다. 따라서 統計야말로 지금까지 人間이 發見한 어떠한 것 보다 더 客觀的이고 普遍的이며 그리고도 實証的인 判斷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行政機關의 모든 活動에는 반드시 行政目的이 수반된다. 더욱이 政府의 役割이 秩序維持뿐 아니라 國民의 福祉에 關한 問題까지를 다루게 될 때에는 行政活動과 그 目的은 더욱 多樣하게 되는 것이다. 卽 政府는 制限된 資源으로 最大의 生産, 最適의 分配 그

리고 效果的인 消費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爲하여는 扶養하여야 할 人口는 얼마이며 이 中에서 勞動可能한 人口는 얼마인가, 必要한 特定商品의 需要와 供給은 얼마이며 그것이 어떻게 變動될 것인가, 그리고 一定量의 物資供給을 爲하여는 얼마의 原材料가 必要하며 그것을 어떻게 調達할 것인가, 그리고 旅客과 貨物의 輸送 需要는 얼마며 現能力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對하여 回答하고 또한 그런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方法을 提示하여야 한다.

그리고 責任感이 있는 行政官이라면 가장 確實하게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費用과 勞力으로서 最大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方法을 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며 判斷하여야 하며 그 判斷을 基礎로 하여 行政活動의 方針을 決定하는 것이다. 이것이 現代的인 合理行政 遂行方法이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 合理的 判斷의 土臺가 되는 것이 統計이며 그 判斷의 方法이 統計解析인 것이다. 따라서 合理的인 行政이란 統計方法과 本質的으로 結合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統計方法이라고 하여 失敗의 危險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統計란 過去와 現在의 經驗을 數字로 表現한 것이기 때문에 未來에도 똑같은 現狀이 되풀이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計的 方法이란 그러한 失敗의 危險을 最少로 하는 方法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統計的 方法이야말로 가장 効率的이고 安定한 方法으로 行政을 遂行해야 한다는 行政活動

本来의 方法에 가장 符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年代에 들어와서부터 統計에 對한 認識이 점차 증가하여 왔으며 最近에는 그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어 統計의 發展을 爲하여 모든 可能的한 措施가 취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重要的 때에 우리는 統計調查業務에 從事하고 있으므로 恒常 自부심을 갖고 統計를 改善 發展시키기 爲하여 研究하는 姿勢로 業務에 임해야만 되겠다.

[附 錄 I]

各 統 計 調 查 概 要 (調 查 統 計 局 所 管)

1. 人 口 센 서 스 (人 口 統 計 課)

人 口 센 서 스 는 每 5 年 (끝 자 리 가 0 또는 5 가 되 는 해) 마
다 實 施 하 는 總 人 口 調 查 로 서 一 定 時 點 (10 月 1 日 0 時) 에 서 의
모 든 사 람 및 家 口 에 對 하 여 個 個 의 社 會 · 經 濟 的 特 性 을 蒐
集 하 여 人 口 및 高 용 정 책 , 保 健 政 策 , 家 族 計 劃 事 業 등 各 種 社 會
經 濟 開 發 의 長 短 期 政 策 樹 立 의 基 本 資 料 을 提 供 한 다 .

2. 住 宅 센 서 스 (人 口 統 計 課)

住 宅 센 서 스 는 每 5 年 마 다 人 口 센 서 스 와 併 行 하 여 實 施 하 는 總
住 宅 調 查 로 서 모 든 住 宅 과 住 宅 은 아 니 더 라 도 사 람 이 居 住 하 고
있 는 모 든 構 造 物 에 對 하 여 個 個 의 質 的 · 量 的 特 性 을 蒐 集 하 여
住 宅 需 給 및 改 良 計 劃 樹 立 의 基 本 資 料 을 提 供 한 다 .

3. 鉦 工 業 센 서 스 (產 業 統 計 課)

鉦 工 業 센 서 스 는 每 5 年 (끝 자 리 가 3 또는 8 이 되 는 해) 마
다 實 施 하 는 鉦 業 및 製 造 業 事 業 體 調 查 로 서 鉦 業 및 製 造 業
事 業 體 에 對 하 여 海 當 年 도 의 1 年 間 의 活 動 實 態 에 關 한 資 料 을
蒐 集 하 여 주 로 鉦 工 業 部 門 의 產 業 構 造 및 그 水 準 을 把 握 함 으
로 써 鉦 工 業 部 門 과 關 聯 된 各 種 經 濟 政 策 樹 立 의 基 礎 資 料 을
提 供 한 다 . (中 業 원 5 인 以 上 事 業 體 의 경 우 에 는 全 數 調 查 로 , 5

人 未滿 事業체의 경우에는 標本調査로 實施하여 왔음)

4. 都小売業센서스(商業統計課)

都小売業 센서스는 每 3年마다 實施하는 都売業 및 小売業 事業体 調査로서 都売業, 小売業 및 飲食・宿泊業의 모든 事業体 에 對하여 一定 時点에서의 運營實態 및 1年間の 活動狀態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여 流通構造 및 物価等 關係政策樹立의 基礎 資料를 提供한다.

5. 鉦工業統計調査(産業統計課)

鉦工業統計調査는 鉦工業센서스를 實施하지 않는 해에 每年 實施하는 鉦業 및 製造業 事業体(約 30,000 事業체)에 對하여 雇傭, 給与, 출하, 在庫, 生産費 및 有形固定資産 등에 關한 지난 1年間の 活動實態를 把握, 鉦工業部門과 關聯된 諸般 經濟政策樹立 및 施策效果測定 등을 위한 基礎統計를 提供한다.

6. 運輸業統計調査(産業統計課)

運輸業統計調査는 每年 實施하는 運輸業体 調査로서 모든 運輸 業体에 對하여 雇傭, 給与, 運輸裝備, 生産(輸入), 生産費(運輸費用), 附加價值(收益), 有形固定資産 및 運輸実績等에 關한 지난 1年間の 活動實態를 把握, 同 部門과 關聯된 諸般 經濟政策樹立 및 施策效果測定 등을 爲한 基礎統計를 提供한다.

7. 建設業統計調査(産業統計課)

免許(建設部長官, 逓信部長官, 工業振興庁長 및 地方自治団体長등) 또는 營業監察(国税庁)을 取得하고 있는 建設業체(約 3,500 業체)를 調査對象으로 하여 同 對象業체의 工事額, 工事費, 附加 價值, 雇傭, 給与, 有形固定資産 및 主要建設裝備 등에 關한 지난 1年間の 活動實態를 每年度別로 把握·建設部門과 關聯된 諸般政策樹立 및 施策效果 測定等을 為한 基礎統計를 提供한다.

8. 建設業受注統計調査(産業統計課)

建設業受注統計調査는 每月別로 實施하는 建設業체調査로서 建設 部長官 免許業体中 170個 大規模業体(도급한도액 순위상 상순위)를 調査對象으로 하여 月間發注者 및 工事種類別 建設工事受注額 (契約額)을 把握·建設活動의 動向을 조기 예측하기 위한 경기 선행지표를 작성하여 關係分野의 長短期政策 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9. 鉦工業動態調査(工業統計課)

鉦工業動態調査는 每月別로 實施하는 標本調査로서 중업원 5人 以上の 鉦業, 製造業 및 電氣業 事業体中에서 標本으로 抽出된 約 5,000여 事業体에 對하여 每月末 現在로 지난 一個月間的 製品生産, 出荷, 在庫, 原材料, 雇傭 및 給与, 조업일수 등을 調査 하여 産業生産指數, 雇傭 및 給与, 主要品目的 月別 生産量 등 鉦工業 分野의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0. 生産能力調査(工業統計課)

生産能力調査는 每月別로 実施하는 製造業体 調査로서 製造業을 營為하는 事業体 中에서 大規模事業体 800여 業体를 指定, 每月末 現在로 지난 1個月間의 製品生産能力, 稼動率等 投融資政策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1. 機械受注統計調査(工業統計課)

機械受注統計調査는 每月別로 実施하는 機械類 生産業体 調査로서 從業員 200人 以上の 機械類 生産大規模企業(約 100個業体)을 對象으로 設備用 機械類(原動機 一般産業機械, 電氣通信機械, 輸送用 機械)의 受注実績을 調査하여 企業의 設備投資狀況의 豫測 및 景氣動向을 早期에 把握함으로써 關係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2. 在庫統計調査(商業統計課)

在庫統計調査는 每月別로 實施하는 都売業体 調査로서 都売業体中 法人 및 從業員 5人 以上인 個人業体 約 2,500個業体에 對하여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 등을 調査하여 流通部門에 對한 國內의 主要物資保有量을 週期的으로 把握함으로써 景氣豫測, 物價政策 및 物資需給 등의 計劃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3. 百貨店統計調査 (商業統計課)

百貨店統計調査는 每月別로 實施하는 綜合小売業体 調査로서 百貨店, 수퍼마켓 등 綜合小売業体에 對한 売上高와 在庫額 등의 動態를 把握하여 消費購買力과 分析 등 各種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4. 都小売業動態調査 (商業統計課)

都小売業動態調査는 每月別로 實施하는 標本調査로서 서울의 都小売業体中에서 標本으로 抽出된 事業体에 對하여 商品販賣, 在庫, 購入 등의 動向을 把握함으로써 流通構造 物価政策 主要商品의 需給計劃 등의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5. 小売物価調査 (物価統計課)

小売物価調査는 순기별로 實施하는 標本調査로서 市部地域 (35 個市)에서 一般消費者의 出入이 가장 많고 價格의 代表性이 높고 繼統적으로 調査가 可能한 소매점포중 標本으로 抽出된 소매점포 (約 4,000 개 점포)에 對하여 一般 消費者가 購入하는 商品 및 서비스 (용역)에 對한 小売價格을 定期的으로 調査하여 消費者物価指數 作成 등 物価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16. 經濟活動人口調査 (人口統計課)

經濟活動人口調査는 每分期別로 實施하는 標本調査로서 標本地域 內에 常駐하는 14才 以上の 사람을 對象으로 每分期 末月の

지정번호	지정통계의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19	노동이동조사	노동청	68.4.18	25호
20	직종별임금조사	"	"	"
21	국부통계조사		68.11.21	51호
21호의 1	정부자산부문조사	한국은행	"	"
21호의 2	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	"
21호의 3	개인자산부문조사	중소기업은행	"	"
21호의 4	가계자산부문조사	경제기획원	"	"
22	어업센서스	수산청	69.4.7	2호
23	광공업동태조사	경제기획원	70.3.27	1호
24	어업생산고조사	수산청	70.12.9	5호
25	어업기본통계조사	"	71.7.9	1호
26	재고통계조사	경제기획원	74.11.13	2호
27	건설업통계조사	"	"	3호
28	건축물착공통계조사	건설부	75.3.28	2호
29	건설업수주통계조사	경제기획원	76.7.26	6호
30	가축통계조사	농수산부	76.12.17	9호
31	철강통계조사	한국철강협회	77.3.21	13호
32	한국전자공업실태조사	한국정밀기기센터	77.12.29	19호

주 : □ 내의 지정통계조사는 현재 조사통계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통계조사임 .

[附錄 II]

지 정 통 계 일 랑 표

지정번호	지정통계의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1	인 구 센 서 스	경 제 기 획 원	62.6.1	3 호
2	주 택 센 서 스	"	"	"
3	인 구 동 태 조 사	"	"	"
4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	"	"
5	농 업 센 서 스	농 립 부	"	"
6	광 공 업 센 서 스	경 제 기 획 원	"	"
7	상 주 인 구 조 사	서울시, 부산시, 각도	62.6.13	19호
8	농 가 경 제 조 사	농 립 부	62.12.8	6호
9	농 산 물 생 산 소 비 조 사	"	"	"
10	가 계 조 사	경 제 기 획 원	"	"
11	생 산 동 태 조 사	상 공 부	64.10.23	16호
12	농 산 물 가 및 임 료 금 조 사	농 협 중 앙 회	65.7.22	17호
13	전 국 소 매 물 가 조 사	경 제 기 획 원	67.2.28	1호
14	도 소 매 업 센 서 스	"	67.5.29	2호
15	식 량 작 물 생 산 량 조 사	농 립 부	"	"
16	농 업 기 본 통 계 조 사	"	68.4.18	25호
17	광 공 업 통 계 조 사	경 제 기 획 원	"	"
18	사 업 체 노 동 실 태 조 사	노 동 청	"	25호

指定된 1週間の 經濟活動狀態를 調査하여 雇傭 및 失業에 関한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標本の 크기 : 422 個 標本地域 - 約 21,000 家口)

17. 人口動態標本調査 (人口統計課)

人口動態標本調査는 每月別로 実施하는 標本調査로서 標本地域內에 常駐하는 모든 사람을 対象으로 하여 出生, 死亡, 婚姻, 離婚 및 人口移動等の 動態事件에 関한 事項을 調査하여 人口自然增加率의 短期的 把握 및 이에 의한 靜態人口의 推定, 國民의 生命票作成, 死亡原因의 分析, 間接出産力의 測定, 家族計劃実績의 評價等 社会經濟分野의 短期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標本の 크기 - 422 個 標本地域 - 약 21,000 家口)

18. 都市家計調査 (物價統計課)

都市家計調査는 每月別로 実施하는 標本調査로서, 市部の 標本地域內의 家口를 対象으로 收入과 支出에 関한 資料를 蒐集하여 消費者物價指數에 必要한 가중치, 消費水準 및 標準生計費에 関한 資料, 賃金水準의 決定, 國民生活實態 把握 등의 社会經濟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標本の 크기 : 284 標本地域 - 約 3,900 家口)

[附錄Ⅲ]

統 計 法

法 律 第 980 号 1962年 1 月 15 日 公 布
改 正 法 律 第 1215 号 1962年 12 月 12 日 公 布
改 正 法 律 第 2799 号 1975年 12 月 31 日 公 布

第 1 條 (目 的) 이 法은 統計에 關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統計의 體系를 整備함으로써 統計의 眞實性和 統計制度의 效率性의 確立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 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号와 같다.

1. “ 統 計 ”라 함은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말한다.
2. “ 指定統計 ”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 (以下 “ 指定機關 ”이라 한다)이 作成하는 統計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調査統計와 報告統計를 말한다.
3. “ 一般統計 ”라 함은 第 2 号에 揭記한 機關이 作成하는 統計中 指定統計 以外의 統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統計를 말한다.
4. “ 調査統計 ”라 함은 調査한 資料에 依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

5. “報告統制”라 함은 報告된 資料에 의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

第3條(統計作成의 承認) ①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를 作成하고자 하는 機關의 長은 그 統計作成에 관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統計作成을 中止하거나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에 대하여 統計作成의 實施·中止·變更 또는 統計作成事務의 改善를 要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濟企劃院長官의 要求를 받은 機關의 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4條(申告) ①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指定統計作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 統計資料에 관한 申告를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을 받은 者が 未成年者나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가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資格) 統計作成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第6條의 統計調査員을 除外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라야 한다.

第6條(統計調査員) 調査統計를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第2條 第2號에 揭記한 機關에 그 統計를 作成하는 期間中 統計調査員을 들 수 있다.

第7條(實地調査) ①統計作成에 관한事務에 從事하는者(第6條의 統計調査員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는 指定統計의 調査나 確認을 위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事項에 관하여 檢査 또는 調査資料提出의 要求를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行하는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8條(秘密의 保護) 統計作成過程에서 알려진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의 秘密에 屬하는 事項은 保護되어야 한다.

第9條(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指定統計의 作成을 위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는 統計作成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統計結果의 公表)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作成한 機關의 長은 遲滯없이 그 統計表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 協議한 後 그 統計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條(統計資料의 分類) ①統計를 作成하는 機關(以下 統計作成機關"이라 한다)이 統計資料를 分類하여 統計表를 作成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標準分類에 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計作成機關이 使用할 標準分類의 名稱은 이를 統計表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標準分類에 의하여 分類하기 困難한 統計資料에 대

하여는 그 統計作成機關의 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의 同意를 얻어 標準分類와 다른 分類를 할 수 있다.

第12條(統計刊行物の 發刊承認) ① 統計刊行物を 發刊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發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統計刊行物の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資料提出의 要求) ① 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 대하여 統計關係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② 第3條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條(指定統計作成에 대한 協力) 指定統計의 作成機關의 長은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機關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 대하여 必要한 協力を 要求할 수 있다.

第15條(權限의 委任等)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그 委任한 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區廳長· 市長· 郡守 其他 所屬機關의 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第16條(補助金) 經濟企劃院長官은 統計의 發展을 위하여 每年度 豫算의 範圍안에서 統計敎育·統計開發·統計調査·統計分析 또는 統計弘報에 관한 事業을 行하는 機關에 대하여 그 運營 및 事業에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17條(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는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5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令을 받고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妨害한 者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偽의 調査資料를 提供하거나 虛偽의 陳述을 한 者
4. 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其他의 者로서 統計作成의 結果를 故意로 眞實과 相異한 것으로 만드는 行爲를 한 者

第18條(同前) ①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하였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의 秘密에 屬하는 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者 以外의 者로서 그 職務上 知得한 第1項의 秘密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第19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承認·申告 其他의 処分은 이 法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부록Ⅳ]

통 계 법 시 행 령

각 령제 512호 1962년 3월 10일 공포
개정각 령제 1214호 1963년 2월 25일 공포
개정대통령제 1763호 1964년 4월 2일 공포
개정대통령제 2505호 1966년 5월 2일 공포
개정대통령제 4182호 1969년 10월 27일 공포
개정대통령제 8116호 1976년 5월 8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통계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정기관의 범위)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국가의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 3 조 (지정통계의 고시)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지정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제 4 조 (일반통계의 범위) ①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통계는 동조 제 2 호에 제기한 기관이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시를 말한다) 나 , 군 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로서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의 종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계작성의 목적

2. 조사할 사항, 조사기일 및 조사방법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하게 할 사항 및 보고기일)

3. 조사표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및 그 결과표의 서식)

4. 집계사항

5.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6. 조사표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와 그 결과표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7. 조사경비의 개산액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조사표 등의 서식기재사항)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제 3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일반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일반통계의 명칭과 그 작성기관의 명칭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격) ①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 2조제 2호에 계기한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조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초급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에서 통계학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 1항에서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라 함은 통계작성의 기획사무나 통계의 분석사무를 말한다.

제 8 조 (통계결과의 검토의뢰)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통계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통계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계결과의 공표 등) ①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 간행물에 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계결과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자료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 ①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은 통계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 한다.

②제 1 항의 통계간행물중 법 제 12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발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통계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만을 수록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물가나 증권시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매일 발간하는 간행물

③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당해 간행물에 수록할 통계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권한의 위임)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 다만, 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군에서 작성한 통계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다만, 시 또는 군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 12 조 (보고기일의 준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의 요구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보고가 기일내에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일경과 3일 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 1 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 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2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 2 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 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보고를 하여야 할 기관의 장에게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내에 당해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일내에 예정보고기일을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중간보고에 명시된 기일내에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⑥제 4 항의 규정은 제 5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는 1 회에 한하여, 중간보고에 명시할 예정보고기일은 본래의 지정기일로부터 6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통계작성에 관한 확인 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이나 통계결과의 공표에 있어서의 법 제 3 조 제 1 항 또는 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 조제 1 항 또는 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통계작성의 방법 등)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통계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정통계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그

지정통계의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V]

통 계 법 시 행 규 칙

경제기획원령제 19호 1962년 8월 21일 공포
경제기획원령제 31호 1964년 4월 16일 공포
개정경제기획원령제 53호 1970년 9월 16일 공포
개정경제기획원령제 79호 1976년 7월 21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정통계의 지정신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통계의 지
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경제기
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통계작성의 승인신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 3 조제 1
항 및 영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
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 예정일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보고요구 예정일
이하 같다) 30 일전까지 별지 제 2 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경제
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
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예정일 7 일전까지 승인신청
을 할 수 있다.

제 4 조 (통계작성의 중지 등의 승인신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 3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통계작성의 실시 등에 관한 통보)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증표) 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영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신청서에는 당해 간행물의 발간예정일, 발행부수 및 통계자료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 (독촉장)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